

2024년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지침서 (2025년 실시)

2025. 5.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조사지침서의 활용

- 본 조사지침서는 “2024년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조사원 교육용 교재입니다.
- 본 조사지침서는 조사원·조사관리자 준수 사항 및 현장조사 요령, 조사표 작성 방법 등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 조사원들께서는 가구명부, 조사대상 가구의 비밀 및 정보 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 준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 여러분께서는 교육 참여는 물론 현장 조사 시에도 본 조사지침서를 항상 휴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업육성팀, 지역별 조사관리자 또는 조사용역 수행기관인 **메트릭스**(☎ 02-6244-07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조사개요 / 3

1. 조사목적	5
2. 법적근거	5
3. 조사연혁	5
4. 조사기간	6
5. 조사주기	6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6
7. 조사대상	7
8. 조사방법 및 체계	7
9. 결과공표	7
10. 조사항목	8
11. 주요 추진일정	9

II — 현장조사 / 11

1. 조사원의 자세	13
2. 조사요원의 역할	15
3. 조사 관련 기본 개념	18
4. 준비조사	23
5. 가구관리요령	34
6. 본조사	36
7. 조사표 작성	40
8. 조사내용 검토 요령	68
9. 조사표 취합 및 행정사항	69

III — 부 록 / 72

1.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표 표지	73
2.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종합표	74
3. 답례품 수령 확인서	75
4. 한국행정구역 분류표(시·도, 시·군·구)	76
5. 한국표준직업분류	79



I . 조사개요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국민의 산림휴양·복지활동 이용목적 및 수요, 선택기준 등을 파악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수급을 예측하고 산림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이를 관련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3항에 의거 승인(제136037호)된 일반통계

3. 조사연혁

1) 조사연구

- 2003년 : 전국민 산림휴양실태조사 연구
- 2013년 : 산림복지 국민인식조사(상/하반기) 연구
- 2015년 : 산림복지 국민인식조사 연구
- 2016년 : 산림휴양복지 전망을 위한 전국민 설문조사 연구
- 2017년 : 숲을 통한 국민행복 인식조사 연구
- 2018년 : 국민 산림여가활동 실태조사 연구

2) 실태조사

- 2019년 8월 : 산림복지통계조사(시행조사)
- 2020년 7월 : 2020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실시(2019년 활동 기준),
국가 통계 승인(통계청)
- 2021년 7월 : 2021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실시(2020년 활동 기준)
- 2022년 6월 : 2022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실시(2021년 활동 기준)
- 2023년 6월 : 2022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실시(2022년 활동 기준)
- 2024년 5월 : 2023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실시(2023년 활동 기준)

4. 조사기간

- 조사 기간 : 2025년 5월 13일 ~ 2025년 6월 21일(40일간)
- 조사 기준 시점 : 2025년 5월 1일 0시

5. 조사주기

- 조사주기 : 매년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가. 모집단

-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함
단, 특성이 유사하고 조사가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만을 조사모집단으로 사용함

나. 표본설계

☐ 표본추출틀 작성

-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 중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
-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는 제외

☐ 층화

- 7개 특·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9개 도로 층화 후 9개 도는 동부/읍·면부로 재층화

☐ 분류지표

- 층화 후 조사구 특성을 반영하는 분류지표(보조 층화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계통추출 방법으로 조사구를 추출(분류지표도 사실상 층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추출방법 : 2단 층화확률비례추출법(Two-stage cluster sampling)

- 표본조사구(PSU) 추출
 - 층화 후 조사구 특성을 반영하는 분류지표(보조층화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계통추출방법으로 조사구 추출

- 표본가구(SSU) 추출
 - 표본조사구의 가구명부를 이용, 최초 시작 가구를 임의추출(SRS)하여 시작가구로부터 10가구를 선정하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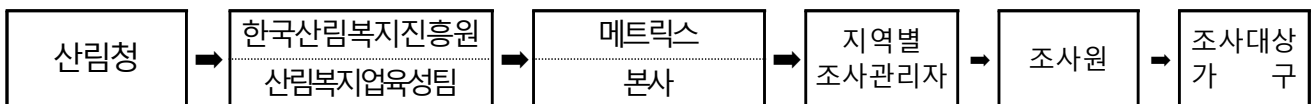
7. 조사대상

- 17개 시도 거주 가구 5,000가구
 - 해당 가구 내 가구주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
(양력 2010년 4월 30일/음력 2010년 3월 17일 이전 출생자)

8. 조사방법 및 체계

-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식 방법」
 - 전화조사 등 병행조사
 - 부재가구는 「자기기입식 방법」 병행조사

- 조사체계



9. 결과공표

- 결과 공 표 : 2025년 11월
- 보고서 발간 : 2025년 11월 「2024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보고서

10. 조사항목

○ 조사 부문: 기본사항,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 당일형 및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산림휴양·복지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 삶의 만족도, 응답자 특성항목 등

부 문	조 사 항 목
기본사항	가구원 현황, 주거형태, 성별, 출생연도, 가구주와의 관계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	지난해 1년간 경험한 산림휴양·복지활동 유형, 지난해 1년간 산림휴양·복지활동 미경험 이유 미경험 상세 이유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	활동 주기 및 시간, 교통수단, 동행인, 목적, 장소, 시기, 만족정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반려동물 동반여부, 희망장소 등
당일형 및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참여/경험활동, 방문시기, 방문지역, 지역 선택이유, 숙박일정, 방문횟수, 동반유형, 방문목적, 소비금액, 이용숙박시설, 정보습득 경로, 만족도, 향후 참여/경험 의향 활동, 반려동물 동반여부 등
산림휴양·복지 프로그램 및 시설	산림휴양·복지 프로그램 인지도/이용경험/이용의향, 산림휴양·복지 시설 인지도/이용경험/이용의향/충분도, 산림휴양·복지활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
응답자특성항목	직업, 최종학력, 혼인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장애등록여부
(별지) 산림복지 관련 이슈 및 정책	삶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평가, 산림복지서비스에 의한 삶의 질

11. 주요 추진일정

- 2025. 5. 7 ~ 5. 12.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교육(기간중 1일)
- 2025. 5. 8 ~ 5. 12. : 준비조사
- 2025. 5. 13 ~ 6. 21. : 본 조사 실시
- 2025. 5 ~ 7. : 조사표 입력 및 내검 실시
- 2025. 8. : 자료처리 및 통계표 작성
- 2025. 8 ~ 10.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2025. 11. : 조사결과 공표



Ⅱ. 현장조사

II. 현장조사

1. 조사원의 자세

가. 조사원의 마음가짐

- 조사원은 산림청을 대표하여 본 조사를 수행한다는 사명감으로 공손하고, 유쾌하며 자신감 있게 조사에 임하도록 함
- 조사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응답자에게 그들의 참여가 가치 있고 필수적임을 인식시켜야 함

나. 조사원의 태도

- 단정한 복장과 겸손한 태도로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조사지침을 반드시 숙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면접과정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응답을 유도하거나 상식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표를 작성해서는 안 됨
-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경우 조사표에 구체적으로 메모해두고, 반드시 조사관리자와 상의한 후 작성하도록 함

다. 조사원의 의무

- 조사기간 중에는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함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리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됨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관련법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제39조(벌칙)

※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 ② 제27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사요원의 역할

가. 조사원

(1) 준비조사

○ 조사관련 용품 수령

- | | |
|----------------|-------------|
| ① 가구명부 & 조사구요도 | ⑥ 비밀보호용 봉투 |
| ② 가구관리종합표 | ⑦ 조사원증 |
| ③ 조사표 및 편철지 | ⑧ 협조공문 |
| ④ 조사지침서 | ⑨ 부재중 알림 명함 |
| ⑤ 답례품 및 수령 확인서 | ⑩ 리플렛 |

○ 조사대상가구 확인

- 조사협조자(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이통반장)에게 협조공문 전달
 - 조사협조자에게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조사협조를 구함

(2) 본조사

○ 면접조사 실시

-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목적과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면접조사를 실시함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의 내용상 모순, 누락된 항목 등 검토함

- 대상가구 중 전출 등의 사유로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여, 메트릭스로부터 대체가구를 지정받음

○ 매일 조사한 결과를 「가구관리종합표」를 작성함

○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하고 「답례품 수령 확인서」의 수령자란에 서명을 받음

○ 소집일에 지정된 장소에 출근함

- 조사관리자에게 「가구관리종합표」 및 작성된 조사표 내용 검토를 받은 후 완료된 조사표는 제출하고, 미완료된 조사표는 보완 후 제출

(3) 조사표류 제출

- 조사된 조사표는 최종 내용검토를 실시함
- 행정구역, 조사구, 가구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조사관리자에게 제출함

나. 조사관리자

- 조사관련 용품 관리 및 배부
 - 메트릭스로부터 조사용품 수령 후 조사원에게 배부
 - 조사표류는 한 번에 모두 배부하지 말고 조사원별로 조사 진척률을 감안하여 배부함으로써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
- 조사원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지도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을 파악하고 조사부진 조사구는 독려
 - 「가구관리종합표」를 통한 조사원의 활동상황을 점검 및 확인
 - 중도 포기 조사원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여 대체하고, 방치된 조사구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
 - 반드시 교육받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지 수시로 파악(현장점검)
 -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조사에 전념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 조사원의 질의 중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은 메트릭스와 협의하여 답변하고, 문제점은 수시로 보고 후 조치
 -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가구를 매일 파악하여 조사원과 함께 현지 방문하여 설득 조사하고, 메트릭스 실사담당에게 설득 지원이나 대응지침을 요청
- 현장조사 품질진단 모니터링
 - 조사원별로 내검 과정에서 재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전화 또는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원이 재조사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전달사항 시달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원별로 수시로 접수하여 내용을 철저히 검토
 - 검토 후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지도
 - 수시로 시달되는 조사내용 관련 지침을 조사원에게 전달

- 직업분류 코딩
 - 조사표의 직업분류 코드를 부여
- 완료된 조사표류 취합 및 관리
 - 조사표류를 취합하여 편철하고, 답례품 지급 내역을 확인
- 조사표 입력 및 검토
 - 조사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함
 - 전산내검에서 체크된 내용에 대해 확인 후 수정 보완
 - 직업분류 코딩 점검

다. 매트릭스

-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을 지도
- 조사용품(조사표, 조사지침서 등)을 제작 및 배부
- 불응·불능가구에 대한 대체 지침작성 및 전달
- 조사표 작성 방법 및 조사내용에 대한 지침을 전달
- 필요 시 조사가구를 설득하는 등 조사관리자의 업무수행을 지원
- 조사표류 최종 접수 및 답례품 지급 내역을 재확인
- 조사완료 후 조사내용 검토 및 입력 등에 대한 지침 및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

3. 조사 관련 기본 개념

가. 조사구

- 조사대상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계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전체 단위 또는 지역을 행정 읍, 면, 동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거 주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분할 설정한 구역 단위를 말함
예)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평균 60가구)
- 조사구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5가지로 분류되나, 본 조사의 표본 조사구는 아파트 조사구와 보통조사구만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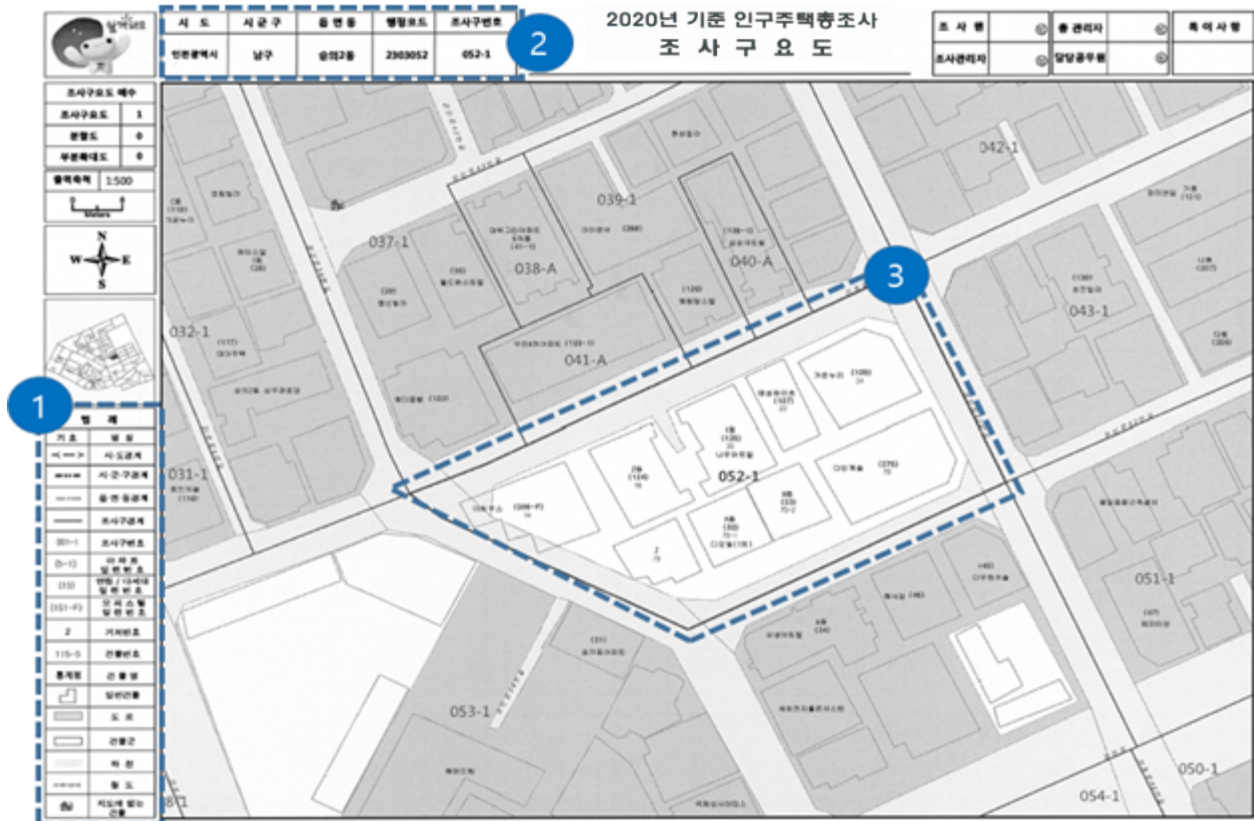
① 아파트조사구(특성번호 : A)	② 보통조사구(특성번호 : 1)
③ 섬조사구(특성번호 : 2)	④ 기숙시설조사구(특성번호 : 3)
⑤ 특수사회시설조사구(특성번호 : 4)	

- 아파트조사구(특성번호 A) :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내에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 이상 19인 이하의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가구수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구
- 보통조사구(특성번호 1) : 단독주택,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빌라, 맨션 등),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내에 살고 있는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 이상 19인 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가구 수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구
- 조사구번호는 총 11자리(숫자 10자리-A)로 되어 있는데 앞 2자리는 시·도, 다음 3자리는 시·군·구, 다음 2자리는 읍·면·동, 다음 3자리는 읍·면·동 내에서 분할된 조사구 일련번호, 마지막 1자리는 조사구 특성(아파트조사구(A), 보통조사구(1) 등)을 나타냄

행정구역 코드											조사구 번호				
1	2	-	3	4	5	-	6	7			8	9	10	-	A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일련번호						

나. 조사구역도

- 조사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도상에 설정한 조사구 경계, 지형지물과 명칭, 거쳐번호 등을 일정한 규격에 따라 표기한 약식지도를 말함



① 조사구역도의 범례 ② 조사구 설명 ③ 조사구 내 조사대상 지역

다. 거쳐

- 거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지칭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를 말하며,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구분함
- 거쳐번호는 3자리로 되어 있으며 거쳐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하고, 조사구가 바뀌면 '001'번부터 다시 시작함

○ 거처 유형

유 형			내 용
주택	단 독 주 택	일반	- 통상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다가구	-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소유권은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으나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매매(분양)가 불가능한 주택
		영업 겸용	-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 ※ 주거 부분보다 영업용 부분의 연면적이 더 많은 경우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아파트		-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아파트’로 허가를 받은 주택 단,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았으면 아파트로 봄
	연립주택		-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 연면적이 660㎡초과하면 ‘연립주택’, 660㎡이하는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이하 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다세대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름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비거주용 건물 내에 사람이 살되,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 - 상가, 학원 등 영업을 목적으로 지은 집이지만 살림하는 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임
주택 이외의 거처	오피스텔		-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의 요건(영구성)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호텔·여관 등에 장기 거주자가 있는 경우
	기숙사 및 사회시설		- 기숙사, 보육원, 요양원 등과 같이 집단 거주를 위한 구조물
	기타		- 가게 또는 사업장의 잠만 자는 방, 건설 공사장의 임시 막사(컨테이너 등), 임시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나 위에서 예시되지 않은 주택 이외의 거처

라. 가구

-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함
- ※ 가구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
-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름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지만 가구는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임

○ 가구 유형

유 형	내 용	조사대상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대 상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대 상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대 상
	1인 가구	대 상
집단가구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대 상
	가족이 아닌 20인 이상의 가구(집단시설 가구)	대 상 아 님
외국인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대 상 아 님

○ 가구 수 구분

-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1가구로 조사함
 - ▶ 부모, 자녀, 친척 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5인 이하의 하숙생, 가사 사용인(가정부, 운전사 등) 또는 종업원으로 구성된 경우
-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조사함
 - ▶ 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
 - ▶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하숙생, 가사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6인 이상 19인 이하인 경우, 주인가구로부터 분리시켜 '별도 가구'로 조사함
 - ※ 주인가구와 생계를 같이 하는 20인 이상의 하숙생, 가사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 집단가구(기숙시설 조사구)는 제외하고 주인가구만 조사함
 - ▶ 주인가구와 숙식을 달리하는 자취생은 자취단위별로 별도의 가구로 각각 조사함

마. 가구원

○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 ▶ 가족이라도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에 **포함**
 - ▶ 친척, 친구,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에 **포함**

○ 조사대상 가구원은

- 2025년 5월 1일 현재 혈연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이 가구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 만 15세 이상인 가구원임

* 만 15세 이상(양력 2010. 4. 30. / 음력 2010. 3. 17. 이전 출생자)

○ 가구원번호는 2자리로 되어 있으며 가구원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하고, 가구가 바뀌면 '01'번부터 다시 시작함

○ 가구원 포함 여부

구 분	내 용
가구원에 포함	- 출장, 친지 방문, 여행, 행사, 입원, 환자 간호 등으로 잠시(3개월 미만) 집을 떠나 외지(국내, 국외)에 있는 사람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 등의 탑승 승무원
	- 예비군 훈련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
	- 구직이나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정착여부를 알 수 없는, 떠난 지 1개월이 되지 않는 가족
	- 숙식을 함께 하는 가사도우미와 하숙인
가구원에서 제외	- 군인 및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으로 입대한 가족
	- 학업 또는 직장 때문에 외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
	-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특수병원, 부녀보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가족
	- 양력 2010. 4. 30. / 음력 2010. 3. 17. 이후에 태어난 사람
	- 외국인

4. 준비조사

준비조사 기간 중 주요 수행 업무
① 표본조사구의 특성 및 대표성 유·무 확인 ② 조사구 요도 확인 및 수정·보완

가. 표본조사구의 특성 및 대표성 유·무 확인(조사구 교체)

- ①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 특성(A, 1)의 일치 여부 확인(**특성 변경**)
(예시) 보통조사구(1) ↔ 아파트조사구(A)
- ② 표본의 대표성 유·무 확인(**대표성 상실**)
(예시) 조사구 특성은 일치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1개 조사구에 30가구 미만인 경우(단, 불확실한 곳은 20가구 이상 조사구도 일부 포함)
⇒ 위와 같이 ①특성 변경, ②대표성 상실(가구수 미달) 시, 즉시 조사구 대체 요구 후, 동일방법으로 대체 받은 조사구를 재확인
(조사관리자 → 메트릭스)

*1차적으로 용역수행사(메트릭스)에서 통계청 승인 이후에 도면상에서 조사구 철거 또는 신축 지역은 사전 확인함

나. 조사구 요도 확인 및 수정·보완

- (1) 조사구 요도의 수령 및 확인(조사관리자)
 - ①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요도의 특징
 - 조사구 요도에 사용된 지도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대도시 또는 주택밀집 지역은 정확도가 높은 1/1,000 축척의 지도를 대부분 사용하였고, 도심변두리나 농촌지역은 1/5,000 축척을, 산악지역이나 군사보호지역은 1/25,000 축척을 사용)

② 조사구 요도의 배부

- 전산으로 작성된 조사구 요도를 A3크기로 출력하여 2부씩 제공

☞ **아파트 조사구(특성번호 A)**

- ▶ 아파트 조사구는 정면에서 바라다 본 건물모양(출입구 형태, 층수, 호수 등)이 나타나 있음
- ▶ 아파트 조사구에 포함된 상가 또는 기타 건물이 모두 표시

☞ **보통 조사구(특성번호 1)**

- ▶ 보통 조사구는 면적과 형태가 각각 다르므로 모양에 따라 작성 방법을 달리 하였음

[면적이 넓은 조사구]

산간지역, 농촌지역 등과 같이 면적이 넓은 조사구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확대도를 작성하여 제공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등)이 포함된 조사구]

공동주택의 정보(층수, 호수, 출입구형태 등)가 이미 파악된 경우에는 조사구 경계 밖이나 별지에 공동주택의 전개도를 표시하였음.

③ 지역별로 제공된 조사구 요도의 수량과 부수 (2부)가 맞는지 확인

④ 제공된 조사구 요도를 검토하여 활용 가능여부를 판단

<전산 조사구 요도의 활용 가능 판단 기준 >

- ▷ 출력된 거쳐(건물)크기가 거쳐 일련번호 및 거주가구수 기입이 가능한지 여부
- ▷ 지형지물(도로, 하천, 건물 등)이 현상태와 비교하여 일부 수정·보완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전산 조사구 요도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업체(메트릭스)에서 제공한 조사구 요도 빈 양식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조사구 요도를 작성한 후 조사원에게 배부

⑤ 조사구의 경계를 일일이 확인한 후에 조사원에게 1부를 배부(1부는 조사관리자가 보관)

- 조사 도중에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게 주의

⑥ 조사구 요도 배부 시 경계를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하고, 조사원이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조사관리자가 현지에 출장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주어야 함

(2) 조사구 요도의 확인

○ 조사구 경계의 확인

- 수행기관(메트릭스)에서 제공한 조사구 요도를 가지고 현장 답사하여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확인
- 표본조사구(표본선정지역)가 다른 조사구와 중복 또는 누락된 지역이 있으면 안됨
- 조사구의 경계가 잘못 표시된 경우에는 조사관리자의 최종 확인

(3) 지형지물과 건물의 확인

○ 주요 건물과 지형지물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지정된 기호(요도상의 범례)를 사용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적색으로 표시함**

- 조사구 요도에 신축 또는 누락된 건물은  로 표시함
- 철거 등으로 없어졌거나 잘못 표시되어 있는 건물은 적색으로 「 X 」 표시함

(4) 거처 확인 및 가구 거주 여부 파악

-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의 거처(주택·기타)가 조사구 요도상 나타난 거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 표본으로 선정된 거처 내에 가구의 거주 여부를 파악, 가구 명부에 조사가능 여부를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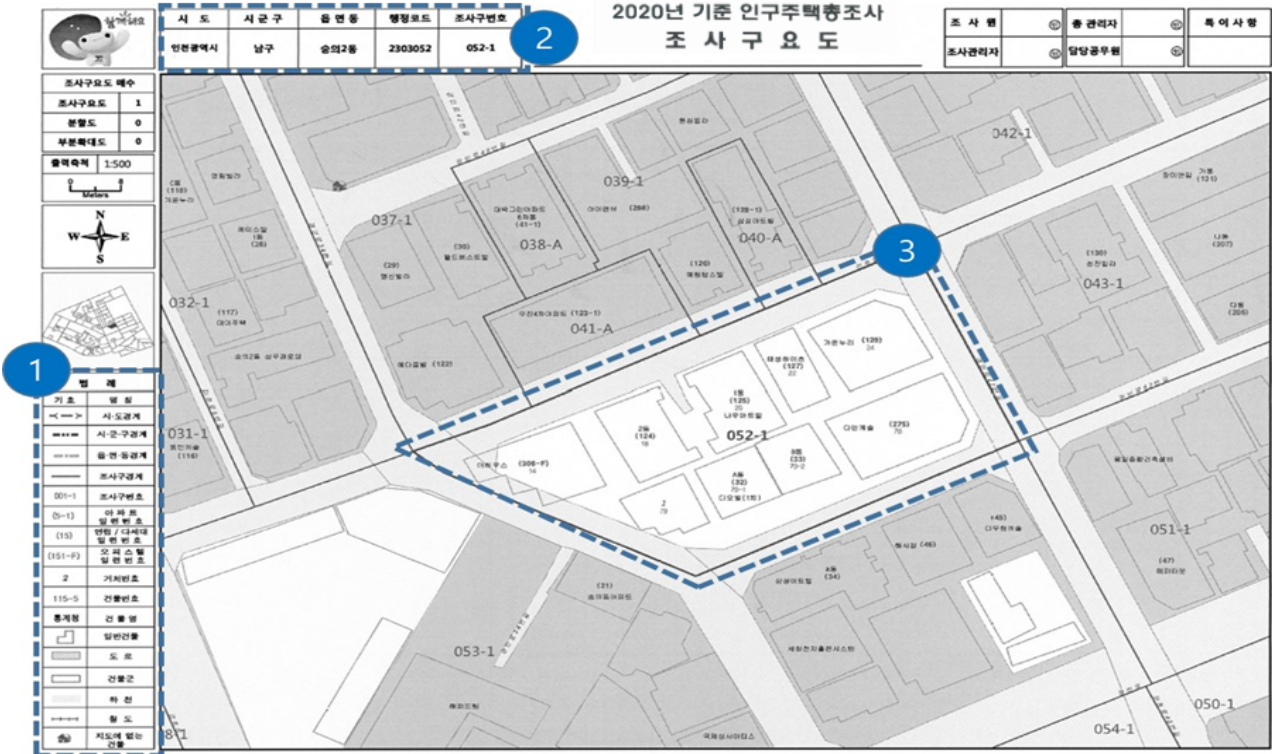
*빈집 및 조사불가능(예:상중, 장기여행) 가구는 표본 가구 대체 지침에 따라 처리함

(5) 조사구 요도 제출 및 관리

- 조사원은 조사구 요도의 확인 작성이 끝난 조사구는 나머지 1부에 동일하게 작성(또는 복사) 후 조사구 요도 오른쪽 위의 조사원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또는 날인)하여 조사표 제출 시 **조사관리자**에게 제출함
- 조사관리자는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구 요도 2부를 확인
 - 조사구 요도 2부가 동일하게 작성(또는 복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서로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원이 보완하여 제출
- 조사관리자는 조사구 요도의 수량(조사구당 2부) 및 작성상태를 확인
 - 조사구 요도의 우측 상단에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또는 날인) → 메트릭스에 제출
- 메트릭스는 조사구 번호순에 의해 정리한 후 지역별로 조사구 요도 간지를 작성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
 - 이때 시도별 조사구 요도를 취합한 후, 지역별 조사구 번호 순서에 따라 1권 내외로 편철하고, 조사구 요도 표지(A3)를 작성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

다. 조사구 요도 예시

<예시1. 조사구요도 기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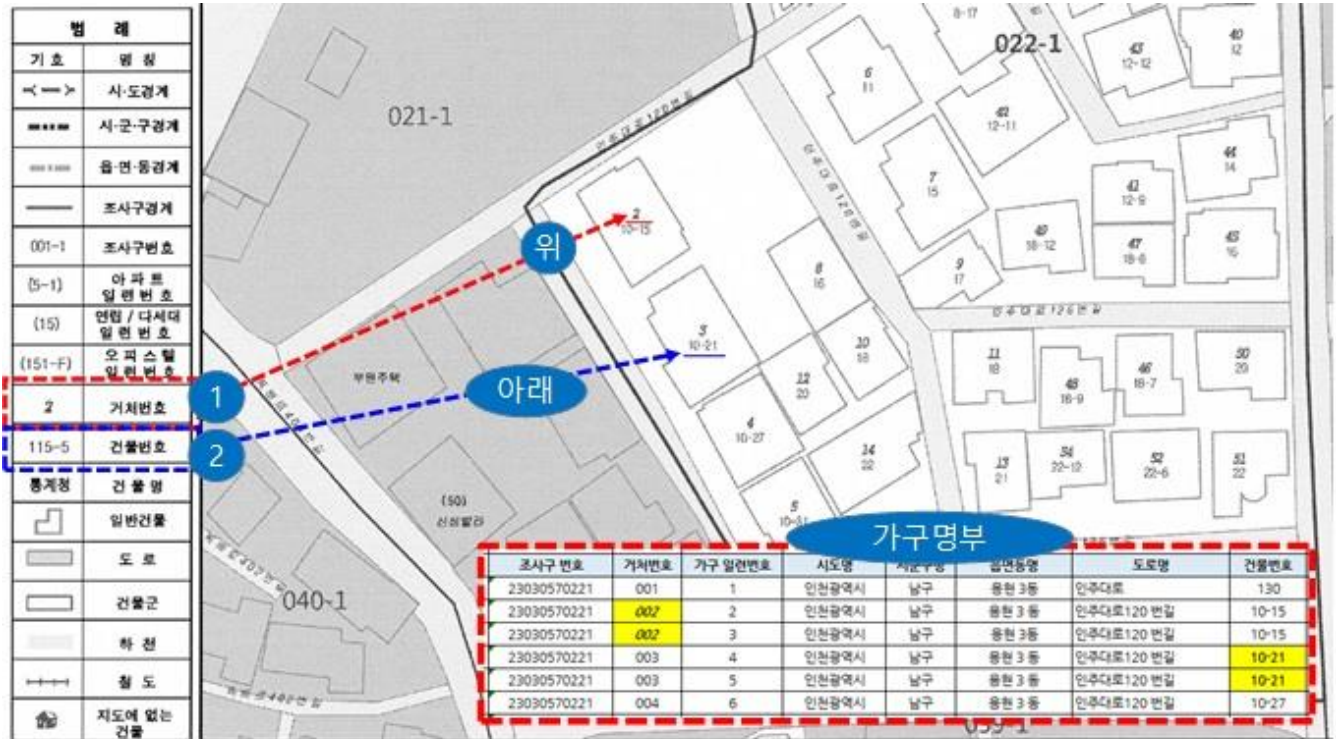


- ① 조사구요도의 범례
 - 조사구요도 내 표기된 지형지물 표시 또는 숫자들에 대한 의미를 표기한 자료
- ② 조사구 설명
 - 표기된 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에 대한 표기
 - 행정코드는 가구명부상의 조사구 번호 중 앞쪽에서 7자리를 나타내며,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에 대한 코드로 최초 수령한 가구명부와 요도에 대해 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
 - 조사구 번호는 가구명부의 뒤쪽 4자리를 나타내며, '3자리(조사지역번호)-1자리(조사구 특성)'로 구성. 뒤 1자리는 보통조사구는 '1', 아파트조사구는 'A'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행정코드	조사구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2305053	Q05-A

- ③ 조사구 내 조사대상 지역
 - 조사구 내에서 조사대상 가구가 있는 지역을 표기
 - 조사구 내 조사대상 가구가 있는 지역은 위 '② 조사구 설명' 중 '조사구 번호' (뒤 4자리)와 일치하며, 음영이 없이 밝게 표시됨

<예시2. 조사대상 거쳐(건물) 확인>



① 거쳐번호

- 거쳐번호는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 즉 주택(건물) 또는 아파트 내 가구 단위를 표시
- 조사구역도의 건물표기 내 표시된 숫자 중 **굵게 기울여서** 표시
- 거쳐 내 여러 가구(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동일한 거쳐번호로 표기되고, 가구 일련번호가 다름

② 건물번호

- 건물번호는 건물단위로 부여된 교육번호
- 거쳐번호별로 건물번호가 다름

※ 가구명부에서 거쳐번호가 '999'는 신축주택(건물)로 조사구 요도에는 표기되지 않음

- 조사 수행은 조사구 리스트의 가구시작번호와 가구명부(시작번호, 주소지)를 확인하여 조사

※ 조사구역도와 가구명부의 거쳐번호(및 건물번호)가 다를 경우, 가구명부를 기준으로 조사

<예시3. 아파트(A) 조사구>



- ① 아파트 조사구 번호
 - 아파트 조사구의 조사구 번호는 숫자 3자리와 알파벳 'A'로 표기
- ② 아파트 조사구
 - 아파트는 조사구 요도에서 단면으로 우선 확인되며, 가구명부에서 아파트의 거쳐번호 및 건물번호로 대상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아파트의 건물명까지 확인
- ③ 아파트의 가구 구성요도
 - 아파트 조사구의 경우, 조사구요도 첫 장에는 단면도(②)가 표기되며, 다음 페이지에 아파트 내 가구 구성에 대한 요도(③)을 표기
 - 아파트 내 가구 구성에 대한 요도에 거쳐번호 및 호수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며, 가구명부의 조사대상 거쳐번호 및 호수 확인 후 조사

<예시/4. 보통(1) 조사구>



- ① 보통조사구 번호
 - 일반조사구의 조사구 번호는 숫자 3자리와 숫자 '1'로 표기
- ②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
 - 아파트 조사구와 달리 단면도로 조사구 요도에 표기
 - 가구명부의 거쳐번호 및 건물번호를 확인하여 조사
- ③ 빌라형태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 일반조사구에서 빌라형태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조사구역도 첫 장에는 단면도(②)가 표기되며, 다음 페이지에 빌라 내 가구 구성에 대한 요도(③)을 표기
 - 일반조사구에 빌라형태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다수인 경우, 해당 숫자만큼 가구 구성 요도(③)이 표기됨
 - 가구명부의 거쳐번호 및 건물번호, 호수 등을 확인하여 조사

라. 가구명부와 조사대상 가구

<예시> 조사구 리스트

No.	요도조사구번호	거처 번호	시작번호 (가구일련번호)	군구별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	건물명	건물동명	건물호명	번지
231	23050510061	005	5	남동구	구월1동	독점로30번길	20	우림빌라	가	201	1213-6번지
232	23080510281	003	3	남동구	구월1동	남동대로	862	남동파크	1	201	1170-2
233	2305051127A	022	7	남동구	구월1동	선수촌로	56	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506	403	1513번지
234	2305051181A	006	2	남동구	구월1동	선수촌공원로	26	두플러스		602	1530번지
235	2305051187A	041	3	남동구	구월1동	선수촌로	27	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602	201	1524번지
236	2305052020A	023	4	남동구	구월2동	호구포로	858	신세계아파트	2	104	342-1번지

<예시> 가구명부

일련 번호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일련 번호	주소					공동주택			번지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도로명	건물 번호명	명칭	동	호수	
1	23080510281	001	1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860				1165-2
2	23080510281	002	2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70
3	23080510281	003	3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남동파크	1	201	1170-2
4	23080510281	003	4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남동파크	1	202	1170-2
5	23080510281	003	5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남동파크	1	301	1170-2
	①											
	②											
6	23080510281	004	6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0
	②											
7	23080510281	005	7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
8	23080510281	006	8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2
9	23080510281	006	9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2
10	③	007										
11	23080510281	008	10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3
12	23080510281	008	11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3
13	23080510281	009	12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4
14	23080510281	010	13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4
15	23080510281	010	14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5
16	23080510281	010	15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6
17	23080510281	011	16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7
생 락												
59	23080510281	055	17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2

- 시작번호(조사구 리스트 참조(지역별 자료))
- 조사구 리스트에서 해당 조사구의 시작번호(가구일련번호) 확인
 - 가구명부 상의 '가구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시작번호부터 조사(예시. 가구일련번호 3에서 시작)
 - 시작번호 가구가 가구명부 상 '빈집'이라도, 시작가구로 설정함

○ 조사대상 가구 선정

- 시작가구(예시. 가구 일련번호 3)로부터 모든 가구를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10가구를 선정
- 10가구 이내에서 불응·불능 등으로 인해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11번째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조사를 실시
 - ☞ 3회 이상 조사대상 가구를 접촉하여 조사 응답을 설득하였으나, 불응·불능인 경우, 조사관리자에게 확인 후 11번째 이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 또한, 시작 가구번호 뒤쪽으로 10가구가 안될 경우, 즉, 총가구가 60가구인 조사구에서 시작가구번호가 55번이면 55~60번과 1~4번 가구를 조사함
(이 때, 주인가구는 주인가구로, 세입자는 세입자로, 가구원수가 동일한 가구로 대체)

※ 조사대상 가구 선정 시 주의할 점

- ▶ '①'의 경우 : 가구명부 상 존재하지 않지만 준비조사 시 실제로 새로운 거처가 지어져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거처번호를 부여하고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
- ▶ '②'의 경우 : 가구명부 상 존재하지 않지만 준비조사 시 실제로 가구가 존재할 경우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
- ▶ '③'의 경우 : 가구명부 상 '빈집'이지만 준비조사 시 실제로 사람이 가구에 거주할 경우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

<예시> 가구명부 상 존재하지 않는 신규 거처를 포함한 조사대상 가구 리스트

3	23080510281	003	3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남동파크	1	201	1170-2
4	23080510281	003	4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남동파크	1	202	1170-2
5	23080510281	003	5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남동파크	1	301	1170-2
	①											
	②											
6	23080510281	004	6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0
	②											
7	23080510281	005	7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
8	23080510281	006	8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2
9	23080510281	006	9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2
10	③	007										
11	23080510281	008	10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3
12	23080510281	008	11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3
13	23080510281	009	12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4
14	23080510281	010	13	인천	남동구	구월1	남동대로					1181-4

마. 가구 대체

(1) 대체 사유

- 불응가구(응답거부)
 - 가구원 전원이 바쁘거나 사생활 노출 기피, 귀찮아서 등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 불능가구(장기부재)
 - 거주시설이 존재하지만, 해외여행,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가구원 전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
- 빈집 및 철거
 - 이사 등으로 인한 전출 가구이거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 해당 가구가 철거된 경우
- 거처 종류 변동
 - 상가 등으로 거처 종류가 변경되어 조사대상 거처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대체 절차

- 조사원 → 시·도 관리자(확인) → 수행기관(메트릭스) 교체
- 단, 신축으로 인해, 새로운 가구가 생긴 경우엔 거처번호 부여 원리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부여함
- 조사대상 가구 찾기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명부상 법정 주소와 현재 도로명 주소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조사대상 가구인지를 결정함
 - 가구명부 상 기재된 가구주 성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가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예시> 조사대상 가구(10가구) 내 불응, 빈집이 포함된 경우

(1) 일련번호 기준으로 시작번호가 11번이고 표본가구 내에 빈집이 없고 불응가구가 있는 경우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비고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조사여부	비고
11	011	9	조사 대상 가구	11	011	9	조사	조사 대상 가구
12	012	10		12	012	10	조사	
13	013	11		13	013	11	불응	
14	014	12		14	014	12	조사	
15	015	13		15	015	13	조사	
16	016	14		16	016	14	조사	
17	017	15		17	017	15	불응	
18	018	16		18	018	16	조사	
19	019	17		19	019	17	조사	
20	020	18		20	020	18	조사	
21	21	19	대체	21	21	19	조사	대체
22	22	20		22	22	20	조사	

(2) 일련번호 기준으로 시작번호가 11번이고 표본가구 내에 빈집과 불응가구가 있는 경우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비고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조사여부	비고
11	011	9	조사 대상 가구	11	011	9	조사	조사 대상 가구
12	012	10		12	012	10	조사	
13	013	11		13	013	11	불응	
14	014	12		14	014	12	조사	
15	015	13		15	015	13	빈집	
16	016	14		16	016	14	조사	
17	017	15		17	017	15	불응	
18	018	16		18	018	16	조사	
19	019	17		19	019	17	빈집	
20	020	18		20	020	18	조사	
21	021	19	대상 추가	21	021	19	조사	대상 추가
22	022	20		22	022	20	조사	
23	023	21		23	023	21	조사	
24	024	22		24	024	22	조사	
25	025	23		25	025	23		

5. 가구관리요령

○ 가구종합표 작성

- 가구관리종합표는 대상 가구의 요약 및 가구방문기록부의 역할을 하며 대체 등의 기준이 되므로 그때그때 정확하게 기록
- 조사구별로 작성하여 군·구별 전체 조사구에 대해 작성
 - 조사구번호, 시작번호, 거쳐·가구번호: 「가구명부」에서 확인
 - 총 가구원: 조사기간에 해당 가구에 상주하는 모든 가구원 수를 기입
 - 만 15세 미만 가구원: 만 15세 미만 가구원 수를 기입
 - 만 15세 이상 가구원: 만 15세 이상 가구원 수를 기입
 - 조사된 가구원: 조사표를 작성한 가구원 수를 기입
 - 주소: 도로명 주소를 기입하며 건물명까지 기입
 - 조사여부: 응답가구, 부적격가구*, 불응가구, 불능가구, 빈집 중 하나를 선택

○ 불응(불능)일 경우, 사유란에 아래와 같이 사유를 기입

불응사유	불능사유
1. 사생활 노출 기피	6. 장기출타(병원입원, 해외여행, 출장 등)
2. 가정사정(실업, 부부이혼 등)	7. 적격응답자 아님
3. 바쁘거나 귀찮아서	8. 불능 기타(장기입원 등)
4. 정부불신	
5. 불응 기타(면접 불가, 접촉회피 등)	

※ 조사기간 중 사람이 살고 있으나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불응으로 처리
불응사유는 '5. 불응 기타(면접불가 등)'로 처리

<예시> 가구관리종합표

시·도	시·군·구	읍·면·동

2024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가 구 관 리 종 합 표

조사원	조사관리자	담당자

조사구번호		-		-		-		시작번호	
-------	--	---	--	---	--	---	--	------	--

일련 번호	거처·가구 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동/층/호)	주택 유형	총 가구원	만15세 미만	만15세 이상	조사된 가구원	조사 여부	불응·불능 사유	비고 (기타)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조사여부 : 1. 응답가구 2. 부적격가구 3. 불응가구 4. 불능가구 5. 빈 집 6. 거처 아님

※ 불응사유 : 1. 사생활 노출 기피 2. 가정사정(실업, 부부이혼 등), 3. 바쁘거나 귀찮아서 4. 정부불신
5. 불응 기타(면접 불가 등)

※ 불능사유 : 6. 장기출타 7. 장애 8. 불능 기타(장기입원 등)

※ 부적격사유 : 9. 조사대상 적격 연령이 없음 10. 외국인으로만 구성

6. 본조사

가. 기본 사항

-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기 전에 조사원증, 조사표, 조사필수품, 필기도구, 안전용품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
 - **조사구역도, 가구명부, 조사지침서, 가구관리종합표, 조사필수품 지급명부** 등을 휴대
 - 가구원 중 조사표를 직접 작성고자 하는 가구원이 있을 때에는 비밀보호용 봉투를 같이 배부
-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올바른 언행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가구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며, 조사업무 수행 중에는 항상 조사원증을 잘 보이도록 패용
-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 조사구의 특성에 따라 가구방문 시간대를 정하며, 가구와 약속한 방문일자와 시간은 반드시 준수
 - 가능한 낮에 조사하도록 하며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은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가구에 양해를 구한 후 방문하여 조사
 - 조사구에 상가지역이 있으면 혼잡한 시간은 피해서 방문
 - 아파트, 연립 등의 조사 시에는 관리인에게 알린 후 진행
 - 대문이나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도 가구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 필요 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함
- 조사 시 협조공문 제시
 - 가구를 방문하면 먼저 어디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밝히고(자신 소개), 조사대상 가구에 사회조사의 목적과 조사된 자료가 추후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응답자가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언어는 존댓말을 사용하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야 하며, 말을 너무 빨리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가급적 또박또박 천천히 말함
-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 이웃이나 다른 가구원이 있는 곳에서 조사하는 것은 피하며, 조사에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함

- 응답내용 비밀보장
 - 조사내용은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설명하여 응답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
- 적극적인 조사응답 유도
 - 조사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할 경우에는 침착하고 겸손한 태도로 조사응답을 유도해야 함
 - 최선을 다해 응답자를 설득하였지만 계속 응답을 거부할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중단하고, 일단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음
- 조사협조에 대한 감사표시
 - 조사가 완료되면 응답자에게 정중하게 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함
- 응답 후에는 반드시 답례품을 지급하고 답례품 수령확인서 작성(서식 제공)
 - 조사구별 1부씩 작성하고, 조사완료 후 검증 시 답례품 수령여부 확인

나. 현장조사 안전 수칙

조사원은 조사구를 돌아다니며 가구를 방문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조사를 사고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1) 통계조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본 사항

- 안전용품 준비
 - 항상 안전용품(호루라기 등)을 휴대하여 위험 시 활용
 -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을 항상 소지
- 담당조사구 확인
 - 조사구의 지형, 주택배치, 개를 기르는지 여부, 교통량, 경찰 지구대(파출소) 등 조사담당지역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
- 비상연락처 확보
 - 조사 중 긴급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연락처(사무실, 인근 지구대)를 메모하여 필요시 즉시 연락

○ 본인 일정 공유

- 조사 당일의 방문 예정지를 가족 및 지인, 조사관리자 등에게 알리고, 조사 도중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반드시 알림

○ 조사활동에 적합한 복장

- 조사활동에 적당한 의상과 신발을 착용하고,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의상, 지나친 화장, 종교·사회단체 배지 부착 등은 피함

(2) 안전사고 예방법

○ 안전용품 준비

- 항상 안전용품(호루라기 등)을 휴대하여 위험 시 활용
-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을 항상 소지

○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사고에 주의

- 도로의 높낮이, 구덩이, 하수구에 주의
- 철제계단 등을 오르거나 내릴 때 주의하며, 비올 때나 야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
- 젖은 평지 등에서도 조심

○ 개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개를 기르는지, 개가 줄에 연결되어 있는지, 줄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방문
- 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 집 안의 동물(개, 고양이 등)도 충분히 주의
- 특히, 개는 본능적으로 무는 습성이 있으므로, 기르는 주인과 함께 있어도 불필요하게 접촉하지 않아야 함

○ 교통사고에 주의

- 차량 이용 시 신호 준수, 예측출발 금지 등 안전운전 해야 함(특히 야간에 주의)

○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 조사는 가능한 밝을 때 방문하여 진행함
- 부득이 야간 조사 시 동료 등 동행자와 함께 수행
-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사에 임함
- 상대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대의 동작에 주의
- 조사 중 불안감을 느낀다면 망설이지 말고 되돌아감

(3) 가구 방문시 안전 수칙

- 조사는 가능한 낮에
- 조사는 현관에서
- 조사원증 제시
- 예의 바른 태도
- 적절한 방문 시간 선택
- 공동주택 조사 시 관리인에게 알림
- 위험 발생 시 큰 소리로 도움 요청
- 조사 중 영업행위나 종교 활동 금지
- ※ 특히, 민원발생소지 사전 차단

(4)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대한 현장 대응 기본 방침

- 현장조사 가능한 경우 평시대로 조사 실시
- 조사거부 및 응답불응 등 조사가 곤란한 경우
 - 조사방법 : 면접은 최소화하고, 전자조사, 통신매체 등 자기기입식 조사를 활용한 비대면 조사로 전환
 - 사후보완 : 조사곤란, 조사거부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후에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방문시 주의사항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 씻기
 - 가구 방문 시 마스크 필수 착용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코로나19 등 전염병 의심증상 시 행동요령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후, 조사관리자 → 메트릭스로 즉시 보고
 - 신종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면 자가격리 후, 결과확정 전까지 해당 사무실 조사관련자 모두 검사결과 확정 전까지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위생관리 철저

7. 조사표 작성

가.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조사표를 작성하기 전에 조사표 표지의 행정구역 코드, 거쳐번호, 가구원코드 등 기본 사항 등을 사전에 기입
- 모든 가구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가구주용 조사표 표지의 전체 가구원 수, 15세 이상 가구원 및 가구원 성명 등을 기입
 - ※ **가구번호는 기입하지 않음**
- 조사표는 가구주용과 가구원용으로 구분되고, 표지내용 및 조사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주는 반드시 가구주용 조사표로 조사되어야 함
 - 가구주가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 순번의 가구원(배우자 또는 실제 가구의 대표자)이 가구주용 조사표로 작성함
(예시) 2인 이상 자취 가구는 2명 중 1명을 가구주로 선정
- 응답자에게 조사내용(설문문항 등)을 설명하면서 조사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함
 - 보기항목이 많은 문항의 경우 응답자가 모든 보기항목을 듣지 않은 채 성급히 대답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듣고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
- 본 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원 본인을 직접 조사해야 함
 - 본 조사는 타 조사와 달리 개인의 주관적 의식 상태를 조사하는 항목이 많으므로 어느 특정 가구원이 대신하여 응답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
 - 따라서 모든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하여야 하나 취업이나 공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피하게 응답자 본인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기입식 방법 권유
 - 자기기입식 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표 작성 요령을 충분히 설명

※ 비밀보호용 봉투 사용

-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할 경우, 조사담당자 이외 사람에게 조사표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표와 함께 배부하며, 약속한 회수일에 회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보호용 봉투는 조사관리자, 조사원만 개봉

- 조사표 작성 후 현장에서 조사항목의 누락 및 착오 사항 등을 점검함
 - 내용검토 기간에 응답가구에 재질의를 할 경우에는 조사에 관한 전체 내용을 다시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점검
- 응답항목은 조사표에 특별지시가 없는 한 주된 것 하나만 표시
 - 다만 조사표에 2개 또는 2개 이상 선택 항목은 중요한 순서에 따라 지시대로 선택
- 응답 항목 중 「기타」에 표시된 것은 그 내용을 ()안에 구체적으로 기입
- 조사표 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 볼펜을 사용함
- 조사표 수정 시 정정사항은 처음 작성한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색으로 한줄로 그어 정정함

<예시>

1. 미혼 ② 배우자 있음(동거포함) 3. 사별 ~~4. 이혼(별거포함)~~

- 조사표는 작성과정이나 작성 후에 타인의 눈에 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관리함
 - 조사활동 중에 조사표가 분실 또는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표 정리는 피함

나. 조사표 회수 시 유의사항(자기기입식)

- 배부한 조사표를 조속히 회수하여 조사표의 분실을 방지함
- 조사표 회수 시 현장에서 바로 조사항목의 누락 및 착오 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함
 - 특히,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된 가구원의 조사표는 항목 누락과 착오사례가 자주 발견되므로 조사표 회수 시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응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회수
 - 회수 후 조사표에 착오사항이나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나 재방문하여 보완
 - 작성일을 하루, 이틀 이상 넘기면 조사된 항목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조사표를 회수하는 날 또는 다음날 바로 내용검토를 실시
 - 내용검토를 실시하며 확인된 항목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표상에 메모하여 입력 및 내용 검토 시 응답자에게 재차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함

다. 조사표 작성요령

(1) 표지사항

□ 조사 수행 전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숲, 산, 공원, 도시숲 등)’을 휴양, 치유, 교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는 등 국민 누구나 ‘산림’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를 메트릭스에 외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 의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로, 응답내용은 같은 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개인적인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원이 귀댁에 방문 시 꼭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조사는 만 15세 이상(양력 2010. 4. 30. / 음력 2010. 3. 17. 이전 출생자) 가구원 대상입니다.

- ▶ 조사원은 조사 수행 전 본 조사에 대한 목적 및 활용, 각 문항별 작성 방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 ▶ 응답자에게 조사 수행 전 본 조사의 수행 목적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함
- ▶ 또한, 자료 수집에 대해 관련 통계법, 작성 내용, 작성 시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함
- ▶ 본 조사의 조사 대상은 해당 가구의 구성원 중 만 15세 이상 모두를 대상으로 함

□ 가구 특성 작성

■ 응답가구 특성

행정구역 코드		조사구 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표본가구 여부	① 표본가구 ② 대체가구
- -		-					
주소지	구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도로명주소					아파트 동·호수	
						동 호	
전체 가구원수	명		적격대상 가구원수	명(만15세 이상)			
가구원 현황	① 1인 가구 ② 2인 가구 ③ 3인 가구 ④ 4인 이상 가구		주거형태	① 단독주택(다가구) ② 아파트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④ 기타(영업용 건물 내 거주, 오피스텔 등)			

▶ 행정구역 코드

- 행정구역 코드는 전체 7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맨 앞 2자리는 시·도, 중간 3자리는 시·군·구, 맨 끝 2자리는 읍·면·동을 의미함
- 행정구역 코드는 <부록>의 코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조사 수행 시 해당 지역의 코드만 발췌하여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구 번호

- 조사구 번호는 전체 4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맨 앞 3자리는 조사구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조사구 특성을 의미함
- 조사구 번호는 사전에 배부된 조사구 명부 및 요도에 표기되어 있음

▶ 거처 및 가구번호

- 거처 및 가구 번호는 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에 표기되어 있으며, 거처번호 및 가구번호 작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 표본가구 여부

- 가구명부에서 표본가구(원래 조사대상인 가구)로 표시된 가구를 조사한 경우는 '① 표본가구'로 표시하고, 조사관리자 및 담당연구원이 별도로 대체가 필요하여 표시된 가구 외 다른 가구를 조사한 경우 '② 대체가구'로 표시함

▶ 주소지 작성

- 주소지는 가구명부에 표기된 주소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주소의 변화가 있을 경우 조사관리자 또는 담당연구원에 즉시 보고함
- 구주소(번지 주소)와 도로명주소 중 1가지는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 후 정확한 주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전체 가구원수 및 적격대상 가구원수

- 전체 가구원 수 :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 상주하는 0세 이상 **총 가구원수**를 기입함
따라서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시켜 작성함
- 적격대상 가구원수 : 조사 대상 가구의 가구원 중 **만15세 이상 가구원** 수를 작성

▶ 가구원 현황

-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원 수에 맞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 주거형태

- 주거형태는 조사 대상가구의 주택 유형에 대해 작성

①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주택,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영업겸용 단독주택을 의미하고,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 되어진 주택으로서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 팔거나 살 수 없는 주택을 의미함. 또한, 영업겸용 단독주택은 주거용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을 의미
② 아 파 트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를 받았으면 아파트로 봄
③ 연립주택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의미하며 2~4층의 맨션, 빌라 등이 포함됨
④ 다세대주택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의미하며 각 호별로 각각 분리하여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 주택과 다름
⑤ 기 타	위의 주택형태를 제외한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과 오피스텔,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의미

<총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 조사대상 제외자

- 외국인, 현역군인(단, 영외거주군인 제외),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국내(타지) 또는 해외상주 취업(학)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요양소·기도원에 수용된 자

* 조사대상 제외자의 경우에도 가구주 설문지 맨 앞장에 기재해야함

(기재 후 면접여부 코드를 부여하여 조사대상 제외자임을 나타내야 함)

<총 가구원에 포함되는 자>

- 선박승무원, 항공기탑승원, 병원에 입원중인 자, 영외거주 직업군인, 집에서 출퇴근하는 공익요원, 상근 예비역, 친척방문 · 출장 ·사업상 여행 중인 사람 등 일시적 출타자

□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

응답자 이름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출생년월	년 월	가구주와 관계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기타

▶ 출생년도

- 주민등록 기준 출생년도 작성
- 가구 내 조사대상이 되는 '적격 가구원'은 만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으로 2010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임

▶ 가구주와 관계

- 가구주란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실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함

☐ **관리사항**

■ 방문현황 및 결과

방문현황		방문결과		
1차방문	___월___일(___요일)/___시___분	방문결과	① 조사완료 ② 응답거절	③ 부재중 ④ 작성중 ⑤ 조사불가
2차방문	___월___일(___요일)/___시___분	방문결과	① 조사완료 ② 응답거절	③ 부재중 ④ 작성중 ⑤ 조사불가
3차방문	___월___일(___요일)/___시___분	방문결과	① 조사완료 ② 응답거절	③ 부재중 ④ 작성중 ⑤ 조사불가
최종면접일시	___월___일(___요일)/___시___분	면접시간	_____분	

▶ 방문현황 및 결과 작성

- 가구명부에 표시된 조사대상 가구는 **최소 3회 방문**을 원칙으로 함
- 최초 방문 시 가구원의 부재로 조사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 방문일자과 요일, 방문시간을 작성하고 조사 진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방문결과를 작성함

▶ 조사가 완료된 경우

- 조사 대상 가구의 모든 적격 가구원에 대해 작성이 완료된 경우, 최종 면접일시를 작성하고 면접시간은 조사표를 작성하는 동안 소요된 시간을 작성함
- 적격 가구원 중 일부 가구원이 부재중이어서 조사표를 가구에 유치한 경우, 최종 회수일을 기준으로 면접일시를 작성함

▶ 조사표를 유지한 경우 점검사항

- 적격 가구원의 부재로 부득이하게 조사표를 일부 유지할 경우, 다른 가구원에게 조사표 작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추후 작성된 조사표 회수 시 현장에서 응답의 누락이나, 오류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보완조사 진행

(2) 설문 항목

□ 지난해 1년간 경험한 산림휴양·복지활동 유형

문1. 귀하께서는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어떤 형태로 산림휴양·복지활동을 하셨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일상형 ② 당일형 ③ 숙박형 ④ 모두 경험 없음 ➔ [문1-1로 이동]

활동 형태	활동 정의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자주, 비교적 짧게 하는 활동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미만)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	하루 중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하는 활동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이상)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최소 1박 2일의 일정으로 하는 활동 * 단, 0박 2일 일정으로 하는 활동은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에 포함됩니다.

➔ [경험이 있는 활동에 모두 응답(일상형 : Part2, 당일형/숙박형 : Part 3)]

- ▶ “산림휴양·복지활동”이란 용어와 같이 전문적인 활동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 산림(숲, 산, 도시숲, 공원 등) 또는 산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서 행해지는 휴식, 취미, 문화, 예술, 창작, 체육(운동·레포츠), 사회참여 등의 모든 활동을 의미함
- ▶ 산림(숲, 산, 도시숲, 공원 등 : 여가를 목적으로 방문 가능한 공공(public space, open to all,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 또는 출입이 가능한 공간, 공용공간)의 녹지 공간
예) 공공정원, 근린공원, 숲길, 공동체 공원, 소규모 공원, 도시공원, 공원, 숲&수목원, 보호림, 산, 국립공원 등
- ▶ <문1>은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대해 2024년 기준 활동 경험을 작성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경험한 경우, <Part>2의 모든 문항에 대해 작성 필요
 - 당일 또는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경험한 경우, <Part3>의 모든 문항에 대해 작성 필요
 - 일상형과 당일 또는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모두 경험한 경우, <Part2>와 <Part3>을 모두 작성
- ▶ 지난해(2024년) 1년 동안 “산림휴양·복지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④ 모두 경험 없음) <문1-1>로 이동
- ▶ ‘일상형’과 ‘당일형’은 이동 및 활동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미만으로 한 활동을 ‘일상형’으로, 4시간 이상은 ‘당일형’ 활동으로 분류 작성함

□ 지난해 1년간 산림휴양·복지활동 미경험 이유

문1-1. **【문1의 ④ 응답자만】**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산림(숲, 산, 공원, 도시숲 등)에서 산림휴양·복지활동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 원인 순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흥미가 없어서 ②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③ 시간이 없어서 ④ 경비가 부족해서	⑤ 정보가 부족해서 ⑥ 시설이 불편해서 ⑦ 가족 중 노약자가 있어서 ⑧ 교통이 불편해서 ⑨ 바다 등 다른 여행지가 더 좋아서 ⑩ 사람이 많아 혼잡해서 ⑪ 주변에 관련 시설/공간이 없어서 ⑫ 기타(직접 작성:)

- ▶ <문1>에서 '④ 모두 경험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지난해 1년간 "산림휴양·복지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1순위, 2순위로 작성
- 1순위, 2순위 응답 후 <Part4>로 이동
 - 1순위만 작성한 경우, 다른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추가적인 질문에도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는 <Part4>로 이동
 - '⑫ 기타'를 선택한 경우, 해당 이유에 대해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지난해 1년간 산림휴양·복지활동 미경험 상세 이유

문1-2. **【문1-1의 1,2순위 ①, ③ 응답자만】** 응답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산림휴양·복지활동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흥미가 없는 구체적 이유	① 다른 여가활동을 하느라 산림휴양·복지활동에 흥미가 없어서 ② 여가활동 자체에 흥미가 없어서 ③ 흥미 있는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없어서 ④ 기타(직접 작성:)
2	시간이 없는 구체적 이유	① 다른 여가활동을 하느라 산림휴양·복지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서 ② 여가활동 자체를 즐길 시간이 없어서 ③ 산림휴양·복지활동을 하고 싶으나 관련 시설 및 공간까지 이동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④ 기타(직접 작성:)

→ 응답 후 **【Part4 이동】**

- ▶ <문1-1>에서 1순위 또는 2순위에 '① 번과 ③ 번에' 응답한 경우에만 작성
- <문1-2의 1> '④ 기타'를 선택한 경우, 해당 이유에 대해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문1-2의 2> '④ 기타'를 선택한 경우, 해당 이유에 대해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주기 및 시간

문2. **【문1의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일상적인” 산책이나 운동 등을 위해 평소 집이나 직장 근처의 산림(숲, 산, 공원, 도시숲 등)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2-1. 활동 주기 :	(주 / 월) _____회	※활동주기에 따라 주 또는 월에 'O' 표기
2-2. 활동 시간 :	(1회 평균) _____시간 _____분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활동시간과 이동시간의 합이 4시간 미만인 활동

- ▶ <문1>에서 ‘④ 일상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활동 주기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 활동을 한 주기에 대해 주 몇 회 또는 월 몇 회로 작성
 - 활동 시간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 활동을 할 경우, 1회 평균 소요되는 시간을 작성(이동시간 제외)
(예) 평균적으로 30분 활동할 경우 → “0”시간 “30”분으로 작성
- ▶ <문2-2>의 활동시간과 <문3-2>의 이동시간(왕복) 합이 4시간이 넘는지 점검,
4시간이 넘는 경우 <문1>의 ② 당일형 숙박으로 변경하여 해당되는 문항을 진행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 교통수단 및 이동시간

문3. **【문1의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집 또는 직장에서 평소 자주 방문하는 산림(숲, 산, 공원, 도시숲 등)까지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또한 해당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편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교통 수단	3-2. 이동 시간(편도 기준)
① 도보	_____시간 _____분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활동시간과 이동시간(왕복)의 합이 4시간 미만인 활동을 말합니다. (4시간 이상인 경우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에 해당)
② 자전거	
③ 자가용	
④ 대중교통	
⑤ 기타(직접 작성 : _____)	

- ▶ <문1>에서 ‘④ 일상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 <문3-1>은 지난해 1년간 일상형 산림휴양·복지 활동을 하기 위해 집 또는 직장 근처 산림(숲, 산, 공원, 도시숲 등)을 방문할 때 이용한 교통 수단에 대해 가장 자주, 많이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
- ▶ <문3-1>에서 “⑤ 기타”를 선택한 경우, 교통수단에 대해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 <문3-2>는 가장 자주,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으로 산림(숲, 산, 공원, 도시숲 등)을 방문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작성
(예) 이동하는데 평균적으로 30분 소요된 경우 → “0”시간 “30”분으로 작성
- ▶ <문2-2>의 활동시간과 <문3-2>의 이동시간(왕복) 합이 4시간이 넘는지 점검,
4시간이 넘는 경우 <문1>의 ② 당일형 숙박으로 변경하여 해당되는 문항을 진행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동행 유형

문4. **【문1의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혼자 | ⑤ (직장)동료 |
| ②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 ⑥ 친목단체/모임(동호회, 종교단체 등) |
| ③ 친척 | ⑦ 학교 단체(소풍 등) |
| ④ 친구/연인 | ⑧ 기타(직접 작성:) |

- ▶ <문1>에서 ‘④ 일상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 <문4>는 지난해 1년간 일상형 산림휴양·복지 활동을 할 때 주로 함께 동행한 사람에 대해 한 가지만 선택
- ▶ “⑧ 기타”를 선택한 경우, 동행인 대해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문4-1. **【문1의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주로 하실 때 반려동물과도 함께 하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 <문1>에서 ‘④ 일상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 <문4-1>은 지난해 1년간 일상형 산림휴양·복지 활동을 할 때 주로 반려동물과도 동반했는지에 대해 작성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 공간

문5. **【문1의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위해 주로 방문한 산림(숲, 산, 공원 등) 공간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이용한 공간 순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산
- ②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③ 공원 :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
- ④ 가로수(숲) : 도시 생태계 회복을 목적으로 도로를 따라 조성되어 도시숲 간을 이어줌(산림휴양·복지활동을 위해 목적만 해당)
- ⑤ 건물 주변 정원(숲) : 학교숲/실내조경 제외, 옥상조경 포함
- ⑥ 기타(직접 작성:)

* 학교숲 :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도시숲

- ▶ <문1>에서 ‘④ 일상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 <문5>는 지난해 1년간 일상형 산림휴양·복지 활동을 할 때 주로 어느 장소를 이용했는지에 대해 작성
- ▶ 1순위 1개만 응답도 가능하며, 최대 2개까지 응답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목적

문6. **【문1의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하신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휴양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⑤ 취미 및 레포츠 활동을 위해
② 건강 증진을 위해	⑥ 친목 활동을 위해
③ 질병 치유를 위해	⑦ 기타(직접 작성:)
④ 교육, 학습을 위해	

- ▶ <문1>에서 '④ 일상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 <문6>는 지난해 1년간 일상형 산림휴양·복지 활동의 주된 목적에 대해 한 가지만 선택
- ▶ “⑦ 기타”를 선택한 경우, 활동 목적에 대해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시기

문7. **【문1의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주로 언제 하셨습니까? 다음 중 **한 가지씩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주간	① 주중	② 주말	③ 공휴일(휴가 포함)
7-2. 시간대	① 새벽(6시 이전)	② 오전(6시~9시 이전)	③ 오전(9시~12시 이전)
	④ 오후(12시~15시 이전)	⑤ 오후(15시~18시 이전)	⑥ 저녁/밤(18시 이후)

- ▶ <문7-1>은 일상적으로 하는 산림휴양·복지 활동을 주로 하는 시기가 주중인지 주말인지 또는 공휴일 인지에 대해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 ▶ <문7-2>는 일상적으로 하는 산림휴양·복지 활동을 주로 하는 시간대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만족도

문8. **【문1의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경험하신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 <문1>에서 '④ 일상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 <문8>은 지난해 1년간 활동한 일상형 산림휴양·복지 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해 작성
- ▶ 만족도 문항은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시 이용희망 공간

문9. **【문1의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향후 1년 이내에 참여/경험하실 의향이 있는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위해 가장 이용하고 싶은 공간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공간 순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산
- ②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③ 공원 :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
- ④ 가로수(숲) : 도시 생태계 회복을 목적으로 도로를 따라 조성되어 도시숲 간을 이어줌(산림휴양·복지활동을 위해 목적만 해당)
- ⑤ 건물 주변 정원(숲) : 학교숲/실내조경 제외, 옥상조경 포함
- ⑥ 기타(직접 작성:)
- ⑦ 없음

* 학교숲 :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도시숲

- ▶ <문1>에서 ‘① 일상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 <문9>는 향후 1년 이내에 참여/경험할 의향이 있는 “일상형” 산림휴양·복지 활동을 위해 이용하고 싶은 공간을 작성
- ▶ 1순위 1개만 응답도 가능하며, 최대 2개까지 응답
- ▶ 1순위가 ‘⑦ 없음’인 경우 2순위는 응답 불가

□ 당일형 또는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 종류

문10. **[문1의 ②,③ 응답자만]** 귀하께서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경험하신 당일형(4시간 이상) 또는 숙박형(1박 2일 이상) 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해당 활동에 대해 V 표시)

산림휴양·복지활동 종류	경험여부		산림휴양·복지활동 종류	경험여부	
	10-1	10-2		10-1	10-2
	당일형	숙박형		당일형	숙박형
1 등산 :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활동	☐	☐	16 숲속생활 체험 : 일정 기간 숲에 머물며 일상생활을 하는 활동	☐	☐
2 하이킹(산책) : 가벼운 옷차림으로 공원이나 숲길을 걷는 활동	☐	☐	17 산악마라톤	☐	☐
3 트레킹 : 산림(숲) 내 탐방로, 둘레길 등을 걷는 활동 노르딕워킹 : 전용 스틱을 사용해 걷는 활동	☐	☐	18 산악스키(스노슈잉 포함) : 일반 스키장이 아닌 지세가 험하고 가파른 산속에서 타는 스키	☐	☐
4 오리엔티어링, 지오캐싱 : 지도, 나침반, GPS 등을 이용해 목적지를 찾아가거나 특정 물건을 숨기고 찾는 활동	☐	☐	19 산악자전거 타기	☐	☐
5 소풍(피크닉)	☐	☐	20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	☐
6 야영(캠핑)	☐	☐	21 래프팅, 계곡물놀이 등 수상활동	☐	☐
7 백패킹(배낭보도여행)	☐	☐	22 산악승마	☐	☐
8 동식물 관찰 및 학습	☐	☐	23 동굴탐험, 계곡탐험	☐	☐
9 자연풍경감상	☐	☐	24 임벽 및 빙벽타기	☐	☐
10 명소탐방 : 산림(숲) 안에 있는 유적지나 명승지를 찾는 활동	☐	☐	25 숲속 족욕 및 스파	☐	☐
11 산나물 등 임산물 수확체험	☐	☐	26 숲속 문화공연 체험·관람 : 산림(숲)에서 열리는 창작/문화/예술 활동	☐	☐
12 나무심기, 숲가꾸기 작업체험	☐	☐	27 로프체험(짚라인 등)	☐	☐
13 산림체조 : 산림(숲) 안에서 맨손, 소도구로 하는 योग나 체조	☐	☐	28 별 관찰 : 산림(숲)에서 밤하늘의 천체를 관찰하는 활동	☐	☐
14 산림욕	☐	☐	29 기타(직접 작성 :)	☐	☐
15 목재공작(목공예)	☐	☐			

*스노슈잉 : 눈이 쌓인 설원에서 스노슈즈를 신고 등산이나 트레킹을 하는 활동

- ▶ <문1>에서 '② 당일형' 또는 '③ 숙박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 <문10-1>은 지난해 1년간 활동한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대해 모두 선택
 -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 : 당일형은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위해 이동시간과 활동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4시간 이상 활동하는 경우를 말함
 - ※ 일상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은 이동시간과 활동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4시간 미만인 활동
- ▶ <문10-2>는 지난해 1년간 활동한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대해 모두 선택
- ▶ '29. 기타'를 선택한 경우, 활동에 대해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내용

문11. **【문1의 ② 응답자만】** 귀하께서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경험하신 당일형(4시간 이상) 산림휴양·복지활동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11-1.참여활동'은 <문10>에서 응답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 11-8. 소비금액은 이동 등 활동을 위해 소비된 모든 경비를 기재

11-1 참여활동 *복수일 경우, 주된 활동 순으로 기재 <문10-1> 참고	11-2 방문시기 <보기내용> 참조		11-3 방문지역 (시/군/구)	11-4 지역 선택 이유 <보기내용> 참조	11-5 당일 일정 횟수	11-6 동반유형 <보기내용> 참조	11-7 방문목적 <보기내용> 참조	11-8 1회 기준 1인 평균 소비금액
	11-2-1 시기	11-2-2 주간						
㉓	4월	②	강원도 인제군	①	2회	①	②	10만 원
㉔	5월	②	경기도 안성시	②	1회	②	②	12만 원
	6월				회			만 원
	7월				회			만 원
	8월				회			만 원

< 보기내용 >

11-2 방문시기	시기	2024년 1월 ~ 12월 까지 해당 월 작성		
	주간	① 주중	② 주말	③ 공휴일(휴가 포함)
11-4 지역 선택 이유	① 수려한 자연경관	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⑥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⑦ 교육성(교육적 측면) ⑧ 기타(직접 작성:)		
	② 이동 및 교통의 편의성 ③ 시설의 편리성, 쾌적성 ④ 저렴한 여행경비			
11-6 동반유형	① 혼자	⑤ (직장)동료 ⑥ 친목단체/모임(동호회, 종교단체 등) ⑦ 학교 단체(소풍, 수학여행 등) ⑧ 기타(직접 작성:)		
	②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③ 친척 ④ 친구/연인			
11-7 방문목적	① 휴양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⑤ 취미 및 레포츠 활동을 위해 ⑥ 친목 활동을 위해 ⑦ 기타(직접 작성:)		
	② 건강 증진을 위해 ③ 질병 치료를 위해 ④ 교육, 학습을 위해			

▶ <문1>에서 '② 당일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문11>는 <문10-1>에서 작성한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대해 작성

<문11-1>은 <문10-1>에서 작성한 활동의 번호를 작성

<문11-2>는 <문11-1>에서 작성한 활동을 경험한 시기에 대해 1월 ~ 12월 중 직접 작성하고, 경험한 시기가 주중인지 주말인지 또는 공휴일인지에 대해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문11-3>은 <문11-1>에서 작성한 활동을 위해 방문한 장소를 "____(시/도) ____ (시/군/구)"로 작성

<문11-4>는 <문11-3>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⑦ 기타'를 선택한 경우, 이유에 대해 직접 작성('기타'에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문11-5>는 <문11-1> 활동을 한 횟수를 작성

※ 방문시기와 방문지역이 동일한 활동은 모든 횟수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방문시기 또는 방문지역이 다른 경우는 동일한 활동이라도 활동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아래 작성 예시 참고)**

- <문11-6>은 <문11-1> 활동 시 함께한 동반 유형에 대해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⑧ 기타'를 선택한 경우, 동반 유형에 대해 직접 작성('기타'에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문11-7>은 <문11-1> 활동 목적에 대해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⑦ 기타'를 선택한 경우, 활동 목적에 대해 직접 작성('기타'에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문11-8>은 <문11-1> 활동 시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비용에 대해 1회 기준 1인 평균 비용을 '만 원' 단위로 작성
- (예시) 1회 활동 시 1인 평균 5만 5천원을 소비한 경우 : ' 5.5 ' 만 원으로 작성

<문11>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작성 예시

[문11 작성예시]								
[예시] 지난해(2024년 1월~12월)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이 다음과 같을 때,								
· 2월 평일, 휴가를 내고, 경기도 과천의 한 도시숲에서 혼자 산책하면서 6시간 가량 휴식을 취했었다. · 9월 평일 중 3회에 걸쳐, 가족과 함께 교육을 목적으로 경기도 양평군의 산림을 방문하여 별자리관찰을 2회, 캠핑을 1회 하였다. *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시 숙박하지 않았으며, 4인 가족이 1회에 총 12만 원 가량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 10월 주말 중 하루에 가입한 직장인 동호회에서 친목활동을 목적으로 북한산(서울시 도봉구)에서 등산 활동을 하였다. * 행사를 위해 동호회비로 1만 원을, 그 외 교통비 및 개인 식비로 1만 원을 지출하여 혼자 총 2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11-1 참여활동 *복수일 경우, 주된 활동 순으로 기재 <문10-1> 참고	11-2 방문시기 <보기내용> 참조		11-3 방문지역 (시/군/구)	11-4 지역 선택 이유 <보기내용> 참조	11-5 당일 일정 횟수	11-6 동반유형 <보기내용> 참조	11-7 방문목적 <보기내용> 참조	11-8 1회 기준 1인 평균 소비금액
	11-2-1 시기	11-2-2 주간						
㉓	4월	②	강원도 인제군	①	2회	①	②	10만 원
㉔	5월	②	경기도 안성시	②	1회	②	②	12만 원
②	2월	③	경기도 과천시	②	1회	①	①	4만 원
㉘	9월	①	경기도 양평군	⑦	2회	②	④	3만 원
⑥	9월	①	경기도 양평군	⑦	1회	②	④	3만 원
①	10월	②	서울시 도봉구	④	1회	⑤	⑥	2만 원

※ <문10-1>에서 '① 등산'을 선택한 경우,

→ 지난해 1년간 등산을 1번 경험한 경우

11-1 참여활동 *복수일 경우, 주된 활동 순으로 기재 <문10-1> 참고	11-2 방문시기 <보기내용> 참조		11-3 방문지역 (시/군/구)	11-4 지역 선택 이유 <보기내용> 참조	11-5 당일 일정 횟수	11-6 동반유형 <보기내용> 참조	11-7 방문목적 <보기내용> 참조	11-8 1회 기준 1인 평균 소비금액
	11-2-1 시기	11-2-2 주간						
①	1월	②	강원도 인제군	①	1회	①	②	10만 원

→ 지난해 1년간 등산을 3번(2번 이상) 경험한 경우(방문시기와 방문지역이 모두 동일한 경우)

11-1 참여활동 *복수일 경우, 주된 활동 순으로 기재 <문10-1> 참고	11-2 방문시기 <보기내용> 참조		11-3 방문지역 (시/군/구)	11-4 지역 선택 이유 <보기내용> 참조	11-5 당일 일정 횟수	11-6 동반유형 <보기내용> 참조	11-7 방문목적 <보기내용> 참조	11-8 1회 기준 1인 평균 소비금액
	11-2-1 시기	11-2-2 주간						
①	1월	②	강원도 태백시	①	3회	①	②	20만 원

→ 지난해 1년간 등산을 3번(2번 이상) 경험한 경우(방문시기 또는 방문지역이 각각 다른 경우)

11-1 참여활동 *복수일 경우, 주된 활동 순으로 기재 <문10-1> 참고	11-2 방문시기 <보기내용> 참조		11-3 방문지역 (시/군/구)	11-4 지역 선택 이유 <보기내용> 참조	11-5 당일 일정 횟수	11-6 동반유형 <보기내용> 참조	11-7 방문목적 <보기내용> 참조	11-8 1회 기준 1인 평균 소비금액
	11-2-1 시기	11-2-2 주간						
①	1월	②	충청남도 태안군	①	1회	①	②	10만 원
①	3월	②	전라남도 목포시	①	1회	①	②	15만 원
①	9월	②	강원도 홍천군	①	1회	①	②	9만 원

※ <문11-5>의 당일 일정 횟수는 <문11-1> 활동의 방문시기와 방문지역이 동일한 경우만 모든 횟수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방문시기나 방문지역이 하나라도 다른 경우는 다른 줄에 활동내용을 작성

※ '12-1.참여활동은 <문10>에서 응답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 12-8. 소비금액은 이동·숙박 등 활동을 위해 소비된 모든 경비를 기재

〈 보기내용 〉		
12-2 방문시기	시기 주간	2024년 1월 ~ 12월 까지 해당 월 작성 ① 주중 ② 주말 ③ 공휴일(휴가 포함)
12-4 지역 선택 이유	① 수려한 자연경관 ② 이동 및 교통의 편의성 ③ 시설의 편리성, 쾌적성 ④ 저렴한 여행경비	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⑥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⑦ 교육성(교육적 측면) ⑧ 기타(직접 작성:)
12-6 동반유형	① 혼자 ②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③ 친척 ④ 친구/연인	⑤ (직장)동료 ⑥ 친목단체/모임(동호회, 종교단체 등) ⑦ 학교 단체(소풍, 수학여행 등) ⑧ 기타(직접 작성:)
12-7 방문목적	① 휴양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② 건강 증진을 위해 ③ 질병 치유를 위해 ④ 교육, 학습을 위해	⑤ 취미 및 레포츠 활동을 위해 ⑥ 친목 활동을 위해 ⑦ 기타(직접 작성:)

- 5

<문12-6>은 <문12-1> 활동 시 함께한 동반 유형에 대해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⑧ 기타'를 선택한 경우, 동반 유형에 대해 직접 작성('기타'에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문12-7>은 <문12-1> 활동 목적에 대해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⑦ 기타'를 선택한 경우, 활동 목적에 대해 직접 작성('기타'에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문12-8>은 <문12-1> 활동 시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비용에 대해 1회 기준 1인 평균 비용을 '만 원' 단위로 작성

(예시) 1회 활동 시 1인 평균 9만 2천원을 소비한 경우 : ' 9.2 ' 만 원으로 작성

<문12>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작성 예시

[문12] 작성예시

[예시] 지난해(2024년 1월~12월)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이 다음과 같을 때,

- 4월 첫째주 1박 2일(토~일) 일정으로 트레킹 및 피크닉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남 화순군의 지리산 둘레길을 1회,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정원을 1회, 전북 전주시 인근 도시숲을 1회 방문하였다.
 - * 전남 화순군에서 가족 4명이 약 28만 원을 사용하였고, 주로 트레킹을 실시하였다.
 - * 전남 순천시에서 주로 피크닉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총 3명이 약 30만 원가량 사용하였다.
 - * 전주시 인근 도시숲에서 열린 꽃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하였고, 입장료를 포함하여 1인당 약 6만 원가량 지출하였다.
- 8월 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화요일까지 가족과 함께 자녀교육을 위해 강원도 태백시의 산림을 방문하여 하였다. 4인 가족이 총 40만 원을 사용하였다.
- 9월 어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2박 3일) 연인과 함께 거주지 인근의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설악산에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등산을 하였다. 숙박비 및 식비를 포함하여 총 40만 원을 소비하였다. (1인당 20만 원)
- 12월, 회사에서 단체로 워크숍을 1박 2일 일정(목요일부터 금요일)으로 경북 영주시에서 한 산림치유 관련 기관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지역 선택은 인근 관광지와 연계성을 위해서였고, 활동으로 1인당 6만 원씩 소비하였다.)

12-1 참여활동 *복수일 경우, 주된 활동 순으로 기재 <문10-2> 참고	12-2 방문시기 <보기내용> 참조		12-3 방문지역 (시/군/구)	12-4 지역 선택 이유 <보기내용> 참조	12-5		12-6 동반 유형 <보기 내용> 참조	12-7 방문 목적 <보기 내용> 참조	12-8 1회 기준 1인 평균 소비금액
	12-2-1 시기	12-2-2 주간			12-5-1 숙박 일정	12-5-2 숙박 횟수			
㉓	4월	②	강원도 인제군	①	2박 3일	1회	①	②	19만 원
㉑	5월	②	경기도 안성시	②	1박 2일	2회	②	②	12만 원
③	4월	②	전라남도 화순군	①	1박 2일	2회	②	①	7만 원
⑤	4월	②	전라남도 순천시	①	1박 2일	1회	②	①	10만 원
㉒	4월	②	전라북도 전주시	②	1박 2일	1회	②	①	6만 원
⑥	8월	③	강원도 태백시	②	3박 4일	1회	②	④	10만 원
①	9월	②	강원도 속초시	②	2박 3일	1회	④	②	20만 원
⑭	12월	①	경상북도 영주시	⑥	1박 2일	1회	⑤	③	6만 원

※ <문10-2>에서 '⑥ 야영'을 선택한 경우,
→ 지난해 1년간 야영을 1번 경험한 경우

12-1 참여활동 *복수일 경우, 주된 활동 순으로 기재 <문10-2> 참고	12-2 방문시기 <보기내용> 참조		12-3 방문지역 (시/군/구)	12-4 지역 선택 이유 <보기내용> 참조	12-5		12-6 동반 유형 <보기 내용> 참조	12-7 방문 목적 <보기 내용> 참조	12-8 1회 기준 1인 평균 소비금액
	12-2-1 시기	12-2-2 주간			12-5-1 숙박 일정	12-5-2 숙박 횟수			
⑥	5월	③	강원도 태백시	②	2박 3일	1회	①	②	20만 원

→ 지난해 1년간 야영을 6번(2번 이상) 경험한 경우(방문시기와 방문지역, 숙박일정이 모두 동일한 경우)

12-1 참여활동 *복수일 경우, 주된 활동 순으로 기재 <문10-2> 참고	12-2 방문시기 <보기내용> 참조		12-3 방문지역 (시/군/구)	12-4 지역 선택 이유 <보기내용> 참조	12-5		12-6 동반 유형 <보기 내용> 참조	12-7 방문 목적 <보기 내용> 참조	12-8 1회 기준 1인 평균 소비금액
	12-2-1 시기	12-2-2 주간			12-5-1 숙박 일정	12-5-2 숙박 횟수			
⑥	7월	③	경기도 양평군	②	2박 3일	6회	①	②	20만 원

→ 지난해 1년간 등산을 6번(2번 이상) 경험한 경우(방문시기 또는 방문지역이 각각 다른 경우)

12-1 참여활동 *복수일 경우, 주된 활동 순으로 기재 <문10-2> 참고	12-2 방문시기 <보기내용> 참조		12-3 방문지역 (시/군/구)	12-4 지역 선택 이유 <보기내용> 참조	12-5		12-6 동반 유형 <보기 내용> 참조	12-7 방문 목적 <보기 내용> 참조	12-8 1회 기준 1인 평균 소비금액
	12-2-1 시기	12-2-2 주간			12-5-1 숙박 일정	12-5-2 숙박 횟수			
①	3월	③	경기도 양평군	②	1박 2일	2회	①	②	20만 원
①	3월	③	경기도 양평	②	2박 3일	1회	①	②	20만 원
①	7월	③	경기도 양평군	②	2박 3일	1회	①	②	20만 원
①	7월	③	강원도 화천군	②	2박 3일	1회	①	②	20만 원
①	7월	③	경기도 양평군	②	2박 3일	1회	①	②	20만 원

※ <문12-5-2>의 숙박횟수는 <문12-1> 활동의 방문시기, 방문지역, 숙박일정이 동일한 경우, 모든
횟수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방문시기나 방문지역, 숙박일정이 하나라도 다른 경우는 다른 줄에
활동내용을 작성

□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숙박시설

문13. **【문1의 ③ 응답자만】** 귀하께서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등 | ⑥ 펜션 |
| ② 산촌마을, 민박 | ⑦ 가족, 친지숙박 |
| ③ 숲속야영장, 야영장 등 | ⑧ 연수원, 수련원 |
| ④ 호텔,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 ⑨ 기타(직접 작성:) |
| ⑤ 모텔, 여관 | |

- ▶ <문1>에서 '③ 숙박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 <문13>은 지난해 1년간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위해 이용한 숙박시설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시설에 대해 한 가지만 작성
- ▶ '⑨ 기타'를 선택한 경우, 주로 이용한 숙박시설에 대해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당일형 또는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정보습득 경로

문14. **【문1의 ②, ③ 응답자만】** 귀하께서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당일형 또는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위해 주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습득하십니까?

- | | |
|--------------------|--------------------|
| ① 지인/가족 추천 | ⑤ SNS(페이스북, 유튜브 등) |
| ② 인터넷 카페/블로그 | ⑥ 관련 기관/시설 홈페이지 |
| ③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 ⑦ 기타(직접 작성:) |
| ④ 방송/신문/라디오매체 | |

- ▶ <문1>에서 '② 당일형' 또는 '③ 숙박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 <문14>는 지난해 1년간 당일형 또는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위한 정보를 얻은 주요 경로에 대해 한 가지만 작성
- ▶ '⑦ 기타'를 선택한 경우, 정보를 습득한 주 경로에 대해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당일형 또는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시 반려동물 동반 여부

문15. **【문1의 ②, ③ 응답자만】** 귀하께서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에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당일형 또는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당일형 ☐ 숙박형) ② 아니오

- ▶ <문1>에서 '② 당일형' 또는 '③ 숙박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 <문15>은 지난해 1년간 당일형 또는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을 할 때 주로 반려동물과도 동반했는지에 대해 작성

□ 당일형 또는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만족도

문16. **【문1의 ②, ③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지난해 1년간(2024년 1월~12월) 경험하신 “당일형 및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해당없음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	☐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숙박형 산림휴양·복지활동	☐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문1>에서 ‘② 당일형’ 또는 ‘③ 숙박형’을 응답한 경우만 작성, 경험이 없는 활동에는 ‘해당없음’에 ‘ V ’ 표시로 작성, <문1>에서 ②, ③을 모두 응답한 경우 모두 작성
- ▶ <문16>는 지난해 1년간 활동한 당일형 또는 숙박형 산림휴양·복지 활동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해 작성
- ▶ 만족도 문항은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향후 1년 이내 경험 의향

문17. **【문1의 ②, ③ 응답자만】** 귀하께서 향후 1년 이내에 참여/경험하실 의향이 있는 산림휴양·복지활동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해당 활동에 대해 V 표시)

산림휴양·복지활동 종류	참여/경험의향	산림휴양·복지활동 종류	참여/경험의향
1 등산	☐	16 숲속생활 체험	☐
2 하이킹(산책)	☐	17 산악마라톤	☐
3 트레킹, 노르딕워킹	☐	18 산악스키(스노우슈잉 포함)	☐
4 오리엔티어링, 지오캐싱	☐	19 산악자전거 타기	☐
5 소풍(피크닉)	☐	20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
6 야영(캠핑)	☐	21 래프팅, 계곡물놀이 등 수상활동	☐
7 백패킹	☐	22 산악승마	☐
8 동식물 관찰 및 학습	☐	23 동굴탐험, 계곡탐험	☐
9 자연풍경감상	☐	24 암벽 및 빙벽타기	☐
10 명소탐방	☐	25 숲속 족욕 및 스파	☐
11 산나물 등 임산물 수확체험	☐	26 숲속 문화공연 체험·관람	☐
12 나무심기, 숲가꾸기 작업체험	☐	27 로프체험(짚라인 등)	☐
13 산림체조	☐	28 별 관찰	☐
14 산림욕	☐	29 기타(직접 작성 :)	☐
15 목재공작(목공예)	☐		☐

- ▶ <문1>에서 ‘② 당일형’ 또는 ‘③ 숙박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 <문17>는 향후 1년 이내에 참여 또는 경험 의향이 있는 활동에 대해 작성
- ▶ ‘29. 기타’를 선택한 경우, 활동에 대해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이 다른 보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산림휴양·복지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문18. **【문1의 ①, 응답자만】** 산림휴양·복지활동이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 영향					영향 없음					긍정적 영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문1>에서 '① 일상형'으로 응답한 경우만 작성

□ 산림휴양·복지 프로그램 인지도 및 이용의향

문19. 귀하께서 알고 있거나 경험한 산림휴양·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에 대해서도 작성해 주십시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V 표시)

【문1 ④응답자는 19-1,19-5만 응답】

	19-1	19-2	19-3	19-4	19-5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 있는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 (2024년 1~12월)	사전예약제 이용 경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 경험	향후 이용의향 있는 프로그램
1 산림치유 프로그램	☐	☐	☐	☐	☐
2 숲해설 프로그램	☐	☐	☐	☐	☐
3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	☐	☐	☐	☐
4 숲길체험 프로그램	☐	☐	☐	☐	☐
5 산림레포츠체험 프로그램	☐	☐	☐	☐	☐

- ▶ <문1>에서 '④ 모두 경험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문19-1>, <문19-5>만 작성
- ▶ <문1>에서 '① 일상형', '② 당일형', '③ 숙박형'으로 응답한 경우 <문19> 모두 작성
- ▶ 해당하는 보기에 대해 'V' 표시로 작성

□ 산림휴양·복지 시설 인지도 및 이용의향

문20. 귀하께서 알고 있거나 경험한 산림휴양·복지시설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또한, 향후 해당 시설의 이용의향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해당 시설에 대해 V 표시)
【문1 ④응답자는 20-1,20-5만 응답】

		20-1	20-2	20-3	20-4	20-5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 있는 산림휴양·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산림휴양·복지시설 (2024년 1~12월)	사전예약제 이용 경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 경험	향후 이용의향 있는 산림휴양·복지시설
1	자연휴양림	☐	☐	☐	☐	☐
2	산림욕장	☐	☐	☐	☐	☐
3	치유의 숲	☐	☐	☐	☐	☐
4	숲길	☐	☐	☐		☐
5	유아숲체험원	☐	☐	☐	☐	☐
6	산림교육센터	☐	☐	☐	☐	☐
7	수목장림	☐	☐	☐		☐
8	숲속야영장	☐	☐	☐	☐	☐
9	산림레포츠시설	☐	☐	☐	☐	☐
10	산림복지단지	☐	☐	☐	☐	☐
11	수목원	☐	☐	☐	☐	☐
12	정원	☐	☐	☐	☐	☐
13	목재문화체험장	☐	☐	☐		☐

- ▶ <문1>에서 '④ 모두 경험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문20-1>, <문20-5>만 작성
- ▶ <문1>에서 '① 일상형', '② 당일형', '③ 숙박형'으로 응답한 경우 <문20> 모두 작성
- ▶ <문20-2>부터 <문20-4>까지는 <문20-1>에서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만 작성하도록 함

□ 산림휴양·복지 시설/공간 충분도

문2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산림휴양·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공간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 ▶ <문21>은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산림휴양·복지 시설/공간 수가 충분한지에 대해 작성

□ 확충 필요 시설/공간

문21-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거주 지역에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산림휴양·복지활동 시설/공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자연휴양림 | ⑨ 산림레포츠시설 |
| ② 산림욕장 | ⑩ 산림복지단지 |
| ③ 치유의 숲 | ⑪ 수목원 |
| ④ 숲길 | ⑫ 정원 |
| ⑤ 유아숲체험원 | ⑬ 목재문화체험장 |
| ⑥ 산림교육센터 | ⑭ 도시숲(가로수, 공원 등) |
| ⑦ 수목장림 | ⑮ 기타(직접 작성:) |
| ⑧ 숲속야영장 | ⑯ 없음 |

- ▶ <문21-1>은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확충이 필요한 산림휴양·복지 시설/공간을 작성
- ▶ 현재 거주 지역에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시설 및 공간이 없는 경우 보기 '⑯ 활동 경험 없음' 선택

□ 산림휴양·복지활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

문22. **【문1의 ①, ②, ③ 응답자만】** 산림휴양·복지활동이 귀하의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 영향					영향 없음					긍정적 영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문1>에서 '① 일상형', '② 당일형', '③ 숙박형'으로 응답한 경우 <문22> 작성
- ▶ <문1>에서 '④ 모두 경험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자료분류용 질문으로 이동

□ 자료분류용 질문

A. 직업			
1)있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직업군인)
2)없음	⑪ 학생 ⑫ 주부	⑬ 취업 준비 중 ⑭ 무직	⑮ 기타(직접 작성 :)
B. 최종학력			
① 초등학교(무학포함)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석사과정) ⑦ 대학원(박사과정)		① 재학(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음) ② 중퇴(학업을 중단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음) ③ 휴학(학업을 잠시 중단하였으나 학교에 다닐 예정) ④ 수료(과정을 완료했으나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함) ⑤ 졸업(정규과정의 학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함)	
C. 혼인여부		D. 자녀유무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⑤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응답자 기준으로 자녀유무에 대해 응답 ① 자녀 없음 ② 미취학아동 자녀 : _____명 (0세 ~ 만 5세 이하) ③ 취학자녀 : _____명 (만 6세~만 18세 이하) ④ 성인자녀 : _____명 (만 19세 이상)	
E. 월평균 가구소득			
※ 월평균 가구 소득은 가구 내 모든 가구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주만 응답 [가구주와의 관계 ①번 응답자만]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만 원 ~ 200만 원 미만 ③ 200만 원 ~ 300만 원 미만 ④ 300만 원 ~ 400만 원 미만 ⑤ 400만 원 ~ 500만 원 미만		⑥ 500만 원 ~ 600만 원 미만 ⑦ 600만 원 ~ 700만 원 미만 ⑧ 700만 원 ~ 800만 원 미만 ⑨ 800만 원 이상	
F. 장애등록여부		F-1. 장애유형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미등록 ③ 등록		① 지체 ⑥ 지적 ⑪ 호흡기 ② 뇌병변 ⑦ 정신 ⑫ 간 ③ 시각 ⑧ 자폐성 ⑬ 안면 ④ 청각 ⑨ 신장 ⑭ 장루·요루 ⑤ 언어 ⑩ 심장 ⑮ 뇌전증	
		F-2. 장애등급	
		① 경증 ② 중증	

- ▶ 응답자 특성은 응답자 자신을 기준으로 작성
- ▶ <A. 직업>의 유무에 따라 응답 후 조사표 뒤쪽에 설명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하여 작성
- ▶ <D. 자녀유무>는 응답자 기준으로 본인의 자녀여부에 대해 작성
자녀가 있는 경우, '0~만5세', '만6세~만18세', '만19세 이상'으로 나누어 작성
- ▶ <E.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구 대표자인 가구주(조사표 첫 페이지 '응답자 특성'의 '가구주와 관계'에서 '① 가구주 본인'으로 작성한 경우)만 작성
-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구 내 모든 가구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삶의 만족도

문23. 귀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4. 귀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하셨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매우 많이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5. 귀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6. 귀하께서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7. 귀하께서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 없다					보통이다					매우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문23>~<문27>는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에 대해 작성
- ▶ 모든 응답자 작성
- ▶ 만족 정도에 대해 한 가지로 응답하고, 각 문항에 대해 작성 누락이 없는지 확인

□ 주관적 건강평가

문28. 평소에 자신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쁘다					보통이다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문28>은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수준에 대해 작성
- ▶ 모든 응답자 작성
- ▶ 건강 정도에 대해 한 가지로 응답하고, 작성 누락이 없는지 확인

□ 산림복지서비스에 의한 삶의 질

문29. **【문1의 ①, ②, ③ 응답자만】** 다음은 숲에서의 활동이 귀하의 삶의 질(자아의식)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 응답에 V 표시)

숲에서의 활동을 통해 나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필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생각대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스스로가 점점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	①	②	③	④	⑤

- ▶ 문1의 ①, ②, ③ 응답자만 응답
- ▶ 각 하위 문항 질문 시 ‘숲에서의 활동을 통해 나는’을 함께 낭독
- ▶ 문항별로 한 가지 응답만 가능하고, 각 문항에 대해 작성 누락이 없는지 확인

문30. **【문1의 ①, ②, ③ 응답자만】** 다음은 숲에서의 활동이 귀하의 삶의 질(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에 대한 인식)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 응답에 V 표시)

숲에서의 활동을 통해 나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같이 갔던 사람들의 취향과 성격을 알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연의 경이로움을 알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9 숲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 문1의 ①, ②, ③ 응답자만 응답
- ▶ 각 하위 문항 질문 시 ‘숲에서의 활동을 통해 나는’을 함께 낭독
- ▶ 문항별로 한 가지 응답만 가능하고, 각 문항에 대해 작성 누락이 없는지 확인

문31. **【문1의 ①, ②, ③ 응답자만】** 다음은 숲에서의 활동이 귀하의 삶의 질(숲에 대한 지식, 정서적인 안정)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 응답에 V 표시)

숲에서의 활동을 통해 나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양한 상황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이전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주변을 관찰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숲과 자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6 일상생활의 고민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7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9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 문1의 ①, ②, ③ 응답자만 응답
- ▶ 각 하위 문항 질문 시 '숲에서의 활동을 통해 나는'을 함께 낭독
- ▶ 문항별로 한 가지 응답만 가능하고, 각 문항에 대해 작성 누락이 없는지 확인

8. 조사내용 검토 요령

※ 조사담당자는 조사표 회수 및 내검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은 다시 방문하여 응답자에게 직접 조사하여 보완함

◎ 내용검토란?

: 조사표의 각 항목을 조사할 때와 조사항목의 전체 기입을 마친 후에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 지침서대로 맞게 기입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관련 항목 사이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응답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

1) 공통 사항

-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
- 조사표 일련번호가 결번이나 중복이 없이 차례로 조사되었는지 확인
- 순위로 응답하는 항목은 번호순이 아닌 우선순위로 응답했는지 확인
- 10점 척도 문항(만족 정도, 인식 정도 등)의 경우, 보기를 2개 이상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누락된 응답은 없는지 확인
- 기타에 표시된 경우 사유가 조사되었는지, 또한 기입된 내용이 다른 응답항목에 포함 되는지 확인
- 응답내용이 변경된 경우 확실하게 수정하여 자료 입력 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

9. 조사표 취합 및 행정사항

1) 조사표 편철

가. 조사표 편철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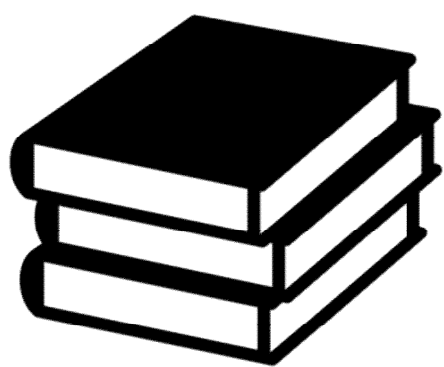
- 조사지역, 가구 수(대상 가구, 조사된 가구), 조사표 수, 조사구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입

나. 조사표 편철 및 제출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구별로 취합하여 편철
- 조사표는 가구번호 순서에 의해 가구단위로 편철하고, 가구 내의 가구원 조사표는 가구원 일련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수행기관인 메트릭스에 제출

2) 조사표류 제출 및 관리

- 조사가 완료된 모든 조사표는 수행기관인 메트릭스에서 일정기간(① 조사결과 입력·내검·자료검토, ②결과분석, ③최종보고서 작성 완료)보관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납품
- 조사표 외 조사관련 자료는 조사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조사관리자는 수행기관인 메트릭스에 제출
 - ① 조사원신분증, ② 조사구역도, ③가구명부, ④기타 잉여자료 등



III. 부 록

Ⅲ. 부록

1.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조사표 표지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조사표
2024년
()
()
시도

2024년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조사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			-			-	

가 구 수					조 사 표 수
총 가구	불능 가구	불응 가구	조사된 가구	대체 가구	

조사자 성명	(인)
--------	-----

2.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종합표

1) 가구관리종합표(조사구별 1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2024년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가 구 관 리 종 합 표

조사원	조사관리자	담당자

조사구번호		-		-		-		-		시작번호	
-------	--	---	--	---	--	---	--	---	--	------	--

일련 번호	거처·가구 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동/층/호)	주택 유형	총 가구원	만15세 미만	만15세 이상	조사된 가구원	조사 여부	불응·불능 사유	비고 (기타)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조사여부 : 1. 응답가구 2. 부적격가구 3. 불응가구 4. 불능가구 5. 빈 집 6. 거처아님

※ 불응사유 : 1. 사생활 노출 기피 2. 가정사정(실업, 부부이혼 등), 3. 바쁘거나 귀찮아서 4. 정부불신
5. 불응 기타(면접 불가 등)

※ 불능사유 : 6. 장기출타 7. 장애 8. 불능 기타(장기입원 등)

※ 부적격사유 : 9. 조사대상 적격 연령이 없음 10. 외국인으로만 구성

3. 답례품 수령 확인서(조사구별 1부)

<2024년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답례품 수령 확인서

_____시/도 _____군/구 _____읍/면/동 조사구번호 : _____

조사원 _____(서명)

연번	가구일련번호	가구주	답례품 수령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4. 한국행정구역 분류표(시·도, 시·군·구) : 2024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11)			대구광역시(22)			경기도(31)		
서울	종로구	11010	대구	중구	22010	경기	장안구	31011
	중구	11020		동구	22020		권선구	31012
	용산구	11030		서구	22030		팔달구	31013
	성동구	11040		남구	22040		영통구	31014
	광진구	11050		북구	22050		수정구	31021
	동대문구	11060		수성구	22060		중원구	31022
	종량구	11070		달서구	22070		분당구	31023
	성북구	11080		달성군	22510		의정부시	31030
	강북구	11090		군위군	22520		만안구	31041
	도봉구	11100					동안구	31042
	노원구	11110	인천광역시(23)				부천시	31050
	은평구	11120	인천	중구	23010		광명시	31060
	서대문구	11130		동구	23020		평택시	31070
	마포구	11140		연수구	23040		동두천시	31080
	양천구	11150		남동구	23050		상록구	31091
	강서구	11160		부평구	23060		단원구	31092
	구로구	11170		계양구	23070		덕양구	31101
	금천구	11180		서구	23080		일산동구	31103
	영등포구	11190		미추홀구	23090		일산서구	31104
	동작구	11200		강화군	23510		과천시	31110
	관악구	11210	옹진군	23520	구리시		31120	
	서초구	11220	광주광역시(24)				남양주시	31130
	강남구	11230	광주	동구	24010		오산시	31140
	송파구	11240		서구	24020		시흥시	31150
	강동구	11250		남구	24030		군포시	31160
				북구	24040		의왕시	31170
		광산구		24050	하남시		31180	
부산광역시(21)			대전광역시(25)				처인구	31191
부산	중구	21010	대전	동구	25010		기흥구	31192
	서구	21020		중구	25020		수지구	31193
	동구	21030		서구	25030		파주시	31200
	영도구	21040		유성구	25040		이천시	31210
	부산진구	21050	울산광역시(26)				안성시	31220
	동래구	21060	울산	중구	26010		김포시	31230
	남구	21070		남구	26020		화성시	31240
	북구	21080		동구	26030		광주시	31250
	해운대구	21090		북구	26040		양주시	31260
	사하구	21100		울주군	26510		포천시	31270
	금정구	21110	세종특별자치시(29)				여주시	31280
	강서구	21120	세종	세종시	29010		연천군	31550
	연제구	21130					가평군	31570
	수영구	21140					양평군	31580
	사상구	21150						
	기장군	21510						

강원도(32)

강원	춘천시	32010
	원주시	32020
	강릉시	32030
	동해시	32040
	태백시	32050
	속초시	32060
	삼척시	32070
	홍천군	32510
	횡성군	32520
	영월군	32530
	평창군	32540
	정선군	32550
	철원군	32560
	화천군	32570
	양구군	32580
	인제군	32590
	고성군	32600
	양양군	32610

충청남도(34)

충남	동남구	34011
	서북구	34012
	공주시	34020
	보령시	34030
	아산시	34040
	서산시	34050
	논산시	34060
	계룡시	34070
	당진시	34080
	금산군	34510
	부여군	34530
	서천군	34540
	청양군	34550
	홍성군	34560
	예산군	34570
	태안군	34580

전라남도(36)

전남	목포시	36010
	여수시	36020
	순천시	36030
	나주시	36040
	광양시	36060
	담양군	36510
	곡성군	36520
	구례군	36530
	고흥군	36550
	보성군	36560
	화순군	36570
	장흥군	36580
	강진군	36590
	해남군	36600
	영암군	36610
	무안군	36620
	함평군	36630
	영광군	36640
	장성군	36650
	완도군	36660
	진도군	36670
	신안군	36680

충청북도(33)

충북	충주시	33020
	제천시	33030
	상당구	33041
	서원구	33042
	흥덕구	33043
	청원구	33044
	보은군	33520
	옥천군	33530
	영동군	33540
	진천군	33550
	괴산군	33560
	음성군	33570
	단양군	33580
	증평군	33590

전라북도(35)

전북	완산구	35011
	덕진구	35012
	군산시	35020
	익산시	35030
	정읍시	35040
	남원시	35050
	김제시	35060
	완주군	35510
	진안군	35520
	무주군	35530
	장수군	35540
	임실군	35550
	순창군	35560
	고창군	35570
	부안군	35580

경상북도(37)

경북	남구	37011
	북구	37012
	경주시	37020
	김천시	37030
	안동시	37040
	구미시	37050
	영주시	37060
	영천시	37070
	상주시	37080
	문경시	37090
	경산시	37100
	의성군	37520
	청송군	37530
	영양군	37540
	영덕군	37550
	청도군	37560
	고령군	37570
	성주군	37580
	칠곡군	37590
	예천군	37600
	봉화군	37610
	울진군	37620
	울릉군	37630

경상남도(38)

경남	의창구	38111
	성산구	38112
	마산합포구	38113
	마산회원구	38114
	진해구	38115
	진주시	38030
	통영시	38050
	사천시	38060
	김해시	38070
	밀양시	38080
	거제시	38090
	양산시	38100
	의령군	38510
	함안군	38520
	창녕군	38530
	고성군	38540
	남해군	38550
	하동군	38560
	산청군	38570
	함양군	38580
	거창군	38590
	합천군	38600

제주특별자치도(39)

제주	제주시	39010
	서귀포시	39020

5. 한국표준직업분류

1 관리자

공공 및 기업 고위직/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 사무 종사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 판매 종사자

영업직/매장 판매직/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축산 숙련직/임업 숙련직/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관련 기계조작직/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 단순노무직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A 군인

영관급 이상 장교/위관급 장교/부사관

2024년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지침서(2025년 실시)

2025년 5월 인쇄

2025년 5월 발행

발행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 치유자원연구팀
인쇄 : (주)메트릭스
